

언론중재

ISSN 2005-2952

2026 Spring Vol.178

04

FOCUS ON MEDIA

탈경계의 시대, 사실과
의견 구분의 미로 찾기

58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조정사례를 통해 살펴본 조정기법

66

AI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답보이스와 선거 : AI 음성 합성 기술이
민주주의에 던지는 질문



언론중재

2026 Spring Vol.178

인쇄

2026년 3월 25일

발행

2026년 3월 30일

등록

1981년 10월 14일

등록번호

서울중.바 00002

발행인

최완주

편집인

김윤정

발행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044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편집위원

배정근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특임교수·언론중재위원

오세욱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표시영 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도진수 법무법인 진수 대표변호사·언론중재위원

*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FOCUS ON MEDIA

탈경계의 시대, 사실과 의견 구분의 미로 찾기

1. 분홍색 유도선이 필요한 뉴스 : 사실과 의견 사이 길 잃은 뉴스 이용자를 위하여

04

송승환 JTBC 기자

2. 플랫폼·인공지능 시대 사실과 의견의 경계 : 탈경계 뉴스 환경에서 저널리즘 규범의 재구성

20

이원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콘텐츠대학 명예교수

3. 사실과 의견 구분 법리의 최근 동향

36

박종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건 속 법률

아동 보호를 위한 비공개 원칙,
공익보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 2023헌마1114 결정의 의미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50

중재위원 노트

서는 자리가 바뀌자 보인 것들
: 15년의 취재수첩과
3년의 중재노트 사이에서

정혜진 변호사, 전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76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조정사례를 통해 살펴본
조정기법

정희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3중재부장

58

판례토크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방지와
플랫폼의 공적 책임
- 'N번방 방지법' 합헌 결정의
법리적 고찰

정지웅 법률사무소 조 대표변호사

82

AI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딥보이스와 선거
: AI 음성 합성 기술이 민주주의에
던지는 질문

오세욱 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66

칼럼

이훈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비판적으로 살펴보기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90



01

분홍색 유도선이 필요한 뉴스 : 사실과 의견 사이 길 잃은 뉴스 이용자를 위하여

송승환 JTBC 기자



1. 현장 기자의 딜레마

“언론이 사실만을 말해야지!”

기사를 배포하고 나면 댓글을 꼼꼼히 읽는 편이다. 그 가운데서 이런 지적이 가끔 있다. ‘정말 뉴스는 사실만을 말해야 하나?’, ‘나는 사실만을 말해왔나?’ 이런 의문이 종종 든다. 왜냐하면 사실만 나열한 기사에서는 “그래서 어찌라는 거냐?”와 같은 지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라’는, 언론의 오랜 책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기자들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을까.

이러한 딜레마 상황은 기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부터 맞닥뜨린다. 11년 차 기자인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경험이 있다. 3년 차 기자이던 2018년, 중앙일보에서 JTBC로 옮기면서 방송기사 쓰기를 새로 배우고 있던 때였다. 새 회사, 새 부서에서 빨리 좋은 기사를 써야겠다는 욕심과 조바심이 큰 상황에서 드디어 단독 발제한 리포트를 쓰게 됐다. 국회 고위 공무원이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후 출장 보고서를 다른 공공기관의 자료를 베껴서 낸 문제였다.

기사 한 줄 한 줄마다 이 공무원이 얼마나 부적절한 일을 했는지 드러내 고자 온 힘을 다해 썼다. 자신 있게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고 부장의 데스크를 기다리는데,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온 부장이 나를 불렀다.

“해석은 빼고 사실만 써라. 이 사람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사실만 나열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시청자에게 드러날 거다.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써봐.”

3년 차 기자가 이 같은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워 숨고 싶었다. 다만 이 경험을 계기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는 잊지 않게 됐다.

이러한 경험은 대다수 기자가 저연차 때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취재하는 것과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것은 기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이다. 기자냐, 기자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으니, 정체성이라고 부를 만도 하다. 자다가 일어나서도 사실과 의견은 구분할 줄 알아야 ‘이제 기자답게 보고, 생각하고, 쓸 줄 아는구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수습기자 기간을 거치면서 이와 상반되는 역량도 훈련받는다. 수습기자들은 선배 기자에게 아이템을 보고하면 “얘기가 안 된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 “얘기가 된다”는 것은 뉴스 이용자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할

만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의미가 있기 위해 기자들은 취재한 사실에 틀을 씌워 기자의 의견이나 시각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수습기자들이 흔히 보고하는 뺨한 교통사고의 경우 누군가에게는 면피성 보고를 하고 ‘킬’ 되는 아이템일 것이고, 사실의 재구성을 잘하는 기자는 운전자의 나이가 많다는 점과 페달 조작 실수가 사고 원인이라는 점을 조합해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 문제와 연결해 봤을 것이다.

의미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의 일이거나, 시의성이 있거나, 갈등이 첨예한 사안 등 다양한 기준이 있다고 저널리즘 교과서에서 배운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외우고 일일이 따져서 판단하는 기자는 없다. 이것 역시 딱 보고 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경험을 통해 훈련한다. 사건의 의미와 맥락을 만들기 위해 기자들이 취재된 사실의 파편들을 재조합하는 것을 이른바 ‘야마’를 만든다고 한다. 이게 없으면 얘기가 안 되는 기사, 즉 기사가 아닌 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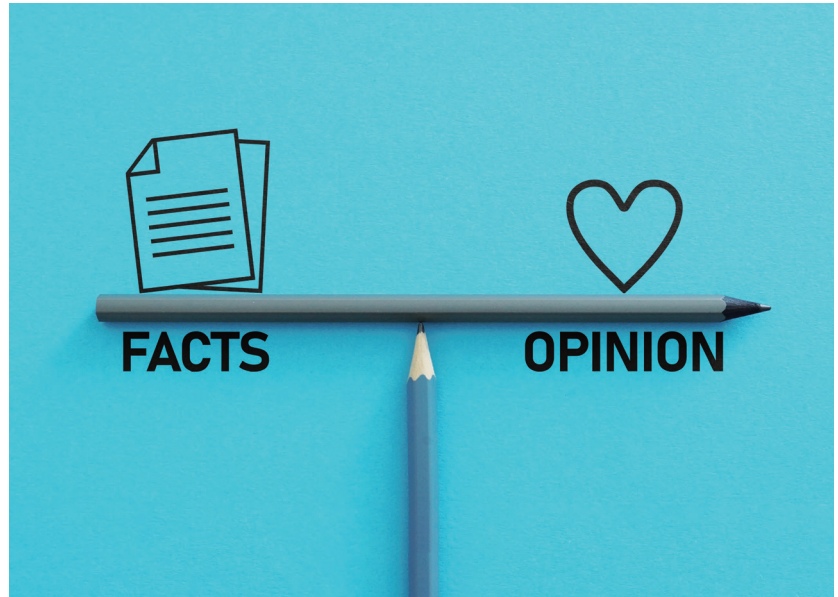
이 밖에도 저연차 기자들은 자신이 발제한 기사가 어디에 어떤 순서와 분량으로 배치되는지를 보며 언론사가 어떤 입장을 선호하는지 파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무리 간단한 단신일지라도 의미의 경중이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사실만을 써야 한다는 규율과 취재된 사실을 가지고 의미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두 가지 역할은 모순적이다. 하지만 기자들은 그 일을 매일 해내고 있다.

안타깝게도 기자들은 둘 다 잘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받곤 한다. 지난해 뉴스 이용자 10명 중 6명가량은 우리 언론의 편파성이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했다.¹⁾ 이는 ‘뉘시성 기사’ 다음으로 가장 문제가 있다고 꼽힌 항목이었다. 또 약 56%는 언론사의 자사 이기주의적 기사가 문제라고 답했다. 두 항목은 언론이 자의적으로 사실에 의견을 담아 왜곡된 기사를 낸다는 뉴스 이용자의 지적을 보여준다.

반면 많은 언론 전문가들은 한국 언론의 형식적인 객관주의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실관계의 나열과 관계자의 말을 직접 인용해 완성하는 스트레이트 위주의 기사는 불친절하고 객관적이지도 않으니, 차라리 맥

1)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2025 언론수용자 조사. https://www.kpf.or.kr/front/research/consumerDetail.do?miv_pageNo=&miv_pageSize=&total_cnt=&LISTOP=&mode=W&seq=600224&link_g_topmenu_id=&link_g_submenu_id=&link_g_homepage=F®_stadt=®_enddt=&searchkey=all&searchtxt=



락과 해설을 더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기자협회도 지난해 계엄과 탄핵 국면을 지나오면서 “사실 확인을 넘어선 맥락 보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일선 기자들에게 취재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준 조직은 과연 몇 곳이나 있었을까”라며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²⁾

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언론인은 이 딜레마에서 앞으로 어려움 겪어야 하는 것인가.

2. 사실과 의견, 왜 구분하려 하나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해 더 넓고 깊게 이야기하려면 기자가 생각하는 사실과 의견, 그리고 그 구분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학술적이거나 기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정의가 아닌 필자의 만 10년의 기자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개인적인 정의다.

사실이란 ‘발생한 일’에 관한 것이다. 기자는 사실을 사실답게 보고, 듣고, 기록하는 일을 한다. 앞서 든 예시처럼, 대인 교통사고가 나면 ‘차가 사람을 쳤다’와 같이 하나의 사실이 성립한다. 하지만 기자가 경찰서 교통과

²⁾ 편집위원회, (2025. 3. 4). 혼란의 시대, 용기 있는 저널리즘 필요하다. 한국기자협회,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8007>



장에게 전화해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차?’, ‘운전자는 누구?’,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는?’, ‘시간과 날씨는?’, ‘차량의 속도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지?’ 등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다. 기자가 사실의 어떤 측면을 보고, 듣고, 기록하느냐에 따라 기사로 재구성된 내용은 모두 다를 수 있다.

의견이란 ‘발생한 사건에 대한 해석과 평가 등이다. 이는 어떤 사안에 대해 기자가 옳거나 그르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사실이나 칼럼 등은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방한다. 하지만 보도 기사에서 이는 금기시된다. 다만 직접 표현하지 않을 뿐, 가장 건조한 기사 유형인 스트레이트 기사에도 의견은 담긴다.

일간지의 1면 톱 기사를 비교해 보면 이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다. 언론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면 톱기사의 아이템은 제각각이고, 같은 아이템일지라도 제목의 표현이 다르다. 2026년 2월 11일 톱기사의 경우, 조선일보는 <쿠팡 배송정보·비번, 1.4억회 털렸다>가 제목이었고, 동아일보는 <내년 의대 490명 증원… 전원 ‘지역의사제’ 선발>이었다. 동아일보도 1면의 옆면 기사로 쿠팡 해킹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조사 결과를 다뤘는데, 제목은 <“쿠팡 유출범, 전화번호 등 배송지 목록 1.5억회 조회”>였다.

조선일보는 제목에서 ‘털렸다’는 표현을 썼고, 동아일보는 ‘유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조선일보는 ‘쿠팡이 털렸다’는 피해에 집중했고, 동아일보는

‘유출범이 조회했다’는 범행을 부각했다. 대표적인 두 보수 신문도 이처럼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데, 매체가 지향하는 이념이나 특성에 따라 의견은 모두 달리 반영될 수 있다.

기사 본문에 기자의 의견을 담는 방법도 있다.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방식은 ‘직접 인용’이다. 전문가, 목격자, 시민 등의 목소리를 큰따옴표 안에 넣거나 넣지 않음으로써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하도록 한다. 직접 인용은 누군가가 그 말을 한 것이 사실이고, 그 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화자가 책임진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기자들이 가장 손쉽게 의견이 담긴 기사를 사실처럼 만드는 도구로 활용한다.

방송 뉴스에서도 기자의 시각을 담는 방법이 있다. 우선 방송 뉴스는 앵커의 도입 멘트나 기자가 직접 나와서 문제를 짚어주는 스탠드업, 스튜디오 출연 등의 방식이 있다. 신문보다는 더 직접적인 방식이다. 이외에도, 기사를 소개하는 앵커 뒤에 나오는 짧은 영상을 무엇으로 할지, 리포트의 첫 그림과 마지막 그림을 어떤 것으로 선택할지, 블러 처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배경음악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글씨체의 자막을 사용할 것인지 등에서 모두 기자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

결국 기사는 사실과 의견의 혼합물이다. 기사에서 사실과 의견이 완벽히 분리되어 본 적이 없다. 과거에도 사실과 의견은 함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언론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하나.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제1항은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규정한다. “보도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라는 말은 사실과 의견을 적당히 뒤섞어 놓지 말라는 말로 해석된다. 다만 왜 이러한 의무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추측컨대 이는 뉴스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생각하는 ‘언론과 기자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려 하는 목적’은 이렇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는,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다. 언론인은 보통의 뉴스 이용자와는 달리 이를 할 수 있다고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말하고 기록하는 것은 의견과 구분되는 사실이다’라는 권위를 만들어 낸다. 언론이 말하는 것을 뉴스 이

용자가 사실로 믿게 만드는 힘의 근원인 것이다.

이 ‘사실을 말할 권위’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곧 언론에 대한 뉴스 이용자의 신뢰가 된다. 이 권위를 인정받는 언론은 신뢰받는 언론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사실과 의견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언론은 사실을 말할 권위를 잃게 되고, 언론의 신뢰도 역시 떨어지게 된다. 언론은 이와 같은 권위와 신뢰를 얻기 위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려 해왔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는 기사는 어떤 기사인가. 신문윤리위원회가 발간한 「사례로 본 신문윤리 가이드북」에 대표 사례 5개가 담겨 있다. 사례 소개에 앞서, 가이드북의 여는 글에는 “주관적 평가나 판단보다는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진실 보도를 할 때 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아집니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니,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언론의 신뢰와 연관되어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

사례 ① <尹 “공개하면 한·중 전쟁” ‘간첩단 검거’ 알고도 함구³⁾ 기사는 본문에 포함된 익명 인용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중요한 사안임에도 익명 인용을 한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받았다.

사례 ② <땅에 떨어진 교권…‘기피직업’된 교사⁴⁾ 기사는 제목에 사용된 ‘기피직업’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본문에서 인용한 ‘교사의 직업 만족도 관련 조사와 교사 외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피직업은 논리적 연결이 약해 과한 표현이라고 주의를 받았다.

사례 ③ <연세대 등 대학가 ‘극우’ 고개…“이한열 열사 뜻 있었나” 비판⁵⁾ 기사에서는 탄핵 반대 세력을 ‘극우’로 단정한 것이 언론사 또는 기자의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받았다.

사례 ④ <노조 몽니에…MG손보 결국 구조조정⁶⁾ 기사에서는 노조의 행위를 ‘몽니’라고 자의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사례 ⑤ <2024 가요결산 대중 치 떨게 한 배신 TOP 5⁷⁾ 기사는 공분을 산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나 설명이 없고, 지나친 비판성 제목을 달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3) A신문, 2025년 4월 17일 자 1면 보도

4) B신문, 2023년 5월 15일 자 26면 보도

5) C신문, 2025년 2월 11일 자 10면 보도

6) D신문, 2025년 5월 14일 자 11면 보도

7) E신문, 2024년 12월 22일 자 온라인 보도

다섯 개의 사례를 종합하면, 주로 제목의 표현이나 본문에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사에 의견이 담겼다. 포함된 의견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거나 논리적 연결이 약하고, 자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선입견, 가치 등이 반영된 경우 사실과 의견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사에 의견이 담긴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의견을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의견을 의견답게, 사실은 사실답게 쓴다면 의견이 담긴 기사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문제는 위장술, 사실인 척하는 의견

최근 언론의 자유에 제약을 두는 법안이 여럿 발의돼 일부는 국회를 통과했고, 일부는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니 다루지 않지만, 이러한 법안이 나오고 추진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언론에 적개심을 품고 불신하는 사람들의 기저에는 한 번쯤 언론에 피해를 보았거나 속아본 경험이 자리 잡은 듯하다. 언론이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위장해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실로 믿고 동조하게 된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싶을 것이다. 그 수단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도 말이다. 물론 그것이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안타깝게도 일부 기자들은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여러 위장술을 사용하고 있다. 뉴스 이용자가 발견하고 피해 갈 수 있도록, 그중 대표적인 3가지 위장술을 해부해 보자.

1) 선별적인 직접 인용

기자들은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의견을 직접 서술할 수 없으니 누군가의 입을 빌려 표현한다. 이는 마치 복화술사와 같다. 자신의 입은 움직이지 않고 인형의 입만 움직이지만, 사실 진짜 말하는 사람은 복화술사다.

어떤 사안의 해석이나 전망을 다룰 때 이런 전략은 두드러지게 사용된다. 특히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서 말하는데 주로 해당 분야 '교수'의 의견을 동원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다룬 기사들

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주 인용됐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하고 38일간 비공개 평의를 하는 기간에 결과를 예상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기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토대로 '8대0 인용설'부터 '5대3 기각설'까지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당시 일부 언론사 또는 기자들은 항간에서 도는 '5대3 기각설'이 가능성이 크다고 본 듯했다. 하지만 기자가 직접 주장할 수는 없으니, 이를 주장하는 특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반복해 인용하면서 이러한 전망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재판소 내부 평의 내용은 접근할 수 없어 이들의 전망은 추측에 불과한 의견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일부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집단에게 마치 사실처럼 전달돼 이들의 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방송에서는 시민 인터뷰를 선별적으로 활용한다. 어떤 문제를 지적할 때 대다수의 시민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일반화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시민 인터뷰를 하는 방식이 '한 명만 걸려라'이다. 기자의 의견과 반대되는 인터뷰는 배제하고 일치하는 인터뷰만 기사에 담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법은 실명 인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익명 인용의 경우로 넘어가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특히 권력자를 익명 인용해 기사의 의견을 강화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 이 중에서도 문제의 급이 나뉜다. 흔히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검찰 관계자',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같은 표현은 양호한 편에 속한다. 적어도 어느 기관에 소속된 익명 취재원인지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당국 관계자', '정부 고위급 관계자'와 같은 표현은 실제로 기자가 취재하고 인용을 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기자가 봐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뉴스 이용자는 주의 깊게 살펴보더라도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 어렵다. 대다수 뉴스 이용자는 이러한 구분을 시도해보거나 의문을 가져보지도 못한 채 기사가 제시하는 방향성이 주류의 생각 또는 확정된 사실이라고 믿게 된다.

2) 한국적인 특수한 관행

직접 인용 방식이 의견을 기사에 담는 전 세계 언론의 보편적인 방식이라면, 한국적인 특수성이 있는 관행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무(無)주체 피동형 문장'이라는 서술 방식이다. 말 그대로 주체를 숨기고 피동형으

로 서술하는 문장이다. 예를 들어 ‘A씨가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와 같은 문장이다. 이런 문장에 사용되는 서술어로는 주로 ‘전해졌다’, ‘알려졌다’, ‘했다고 한다’, ‘확인됐다’, ‘파악됐다’ 등이 있다.

예로 든 문장을 능동형으로 고치면 “검찰이 A씨의 뇌물 혐의를 조사했다” 또는 “검찰은 ‘A씨의 뇌물 혐의를 조사했다’고 밝혔다”가 된다. 이렇게 쓰면 행위의 주체가 검찰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이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검찰에게 확인해 보면 되겠다는 단서가 담기게 된다. 하지만 무주체 피동형 문장으로 쓴 경우 그 사실을 누구에게 확인했는지,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이 불명확해진다. 이런 방식으로 문장에 주체 없이 기자의 의견을 넣은 뒤 ‘해석된다’, ‘풀이된다’, ‘지적이 나온다’ 등으로 끝맺으면 쉽게 의견을 사실처럼 포장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무주체 피동형 문장은 수습기자 기간 ‘절대로 쓰지 말라’고 교육받은 서술 방식이다. 이러한 문장을 쓴다는 것은 해당 사실에 대해 취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내용은 아예 기사에 담아서 안 된다고 교육받았다. 다만 타 언론사의 기사 중 정말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는데, 도저히 확인이 안 되지만 쫓아가는 기사를 써야만 할 때, 해당 언론사를 인용하며(예: A신문에 따르면) 무주체 피동형 문장(예: 전해졌다)을 쓰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표현을 과거보다 더 쉽게 사용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 ‘빅키인즈’에서 대표적인 무주체 피동형 서술어 ‘전해졌다’와 ‘알려졌다’를 포함한 기사를 검색해 기간별 기사 수를 비교해 보면 대략적인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10년 전인 2016년에는 이러한 서술어를 포함한 기사가 5만8000여 건이었는데 매년 증가해 2025년에는 9만2000여 건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새로운 방식의 한국적인 특수한 관행도 등장했다. 기사의 서두에서 ‘○○일보 취재를 종합하면’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표현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취재원 인용 없이 기자가 사실을 단정적으로 직접 서술하는 방식의 기사가 최근 늘고 있다. 이는 피의사실 보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방식은 뉴스 이용자에게 마치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니 이는 사실이다. 그러니 믿어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과거에는 ‘관계자’의 권위를 차용해 의견을 담았다면, 이제는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재구성

한 것이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사실을 말할 권위를 내재화한 이런 과감한 서술 방식은 어디에서 비롯한 것일까. 시기적으로는 2019년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후,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기사를 쓰기 어렵게 되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으로 추측된다. 이른바 ‘관계자 저널리즘’ 혹은 ‘받아쓰기 저널리즘’으로 비판받는 관행을 못하게 막았더니 문제가 이상하게 더 심각해진 것이다. 이처럼 언론이 과감하게 사실을 선언할수록 반대로 뉴스 이용자는 기사 내용을 검증할 출처를 찾을 수 없게 되고,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어렵게 된다. 이는 결국 언론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3) 논란 만들기

마지막으로 의견을 사실로 가장 쉽게 둔갑시키면서도 강력한 파급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다. ‘논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논란의 국어사전 상 뜻은 ‘여럿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다툼’이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이를 ‘사사로운 의견 다툼을 과장해 공론장의 문제로 키움’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몇몇 기자들은 어떤 문제를 비판하고 판을 키우고 싶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의 댓글을 살핀다. 여기서 비판적인 내용만을 몇 개 모아, ‘논란이 되고 있다’거나 ‘공분이 일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쓴다. 이러한 의견 다툼이 있기는 하므로 이는 마치 ‘사실과 같아 보이지만, 이를 중요한 문제로 키우는 것에는 기자의 ‘의견’이 다분히 반영돼 있다.

문제는 이 손쉬운 방법으로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공인 중에는 피해자가 되어 보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렵고, 최근에는 일반인조차도 심심치 않게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이나 이에 질린 뉴스 이용자들은 의견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언론을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불만과는 반대로 최근 사실을 가장하여 의견을 보도하는 방식을 언론사의 주된 경영 전략으로 사용하는 곳이 늘고 있다. 뉴스 이용자가 듣고 싶어 하는 의견을 사실로 만들어 보도하면서 이들을 충성도 높은 팬덤으로 유지하는 전략이다.

필자 역시 때때로 취재 현장에서 “저는 JTBC 뉴스룸만 봐요”라고 응원



해 주는 시민을 만난다. 이럴 때마다 항상 “감사하지만, 여러 언론사를 고루 봐 주세요”라고 부탁한다. 일시적으로 충성도 높은 뉴스 이용자가 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이는 갈증 날 때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과 비슷하다. 결국 다른 언론사들도 의견을 사실처럼 포장해 팬덤을 유지하는 경쟁에 뛰어들면 한국 언론 전체의 뉴스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4. 구분하기에서 드러내기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뉴스라는 것은 사실의 재구성이고, 사실만을 나열한 기사에서도 선택, 배제, 배열 등을 통해 필연적으로 의견이 부여된다. 여기에 대다수 언론사는 자사의 방향성을 반영한다. 그 방법으로는 제목의 표현, 본문에서의 직접 인용, 서술 방식의 변화 등이 있다.

기사가 사실과 의견의 혼합물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잘 구분해서 쓸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지금의 취재와 기사 작성 관행 내에서 낼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적절히’라는 단어 말고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

앞서 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사실과 의견의 구분 원칙을 어긴 사례 및



사유들을 다시 살펴보면, 언론은 기사에 의견을 담기 위해 적절한 근거를 포함해야 하고, 적당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적당한 강조는 허용되지만 정도가 지나쳐 과장이 되면 문제가 되는 식이다. 하지만 적절히, 적당히 잘 구분하기란 쉽지 않고 기자마다, 언론사마다 기준이 달라서 잘 지키기도 어렵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해법으로 으레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뉴스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이다. 뉴스 이용자가 기사에 포함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읽을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법을 공부해서 나 홀로 소송을 통해 잃은 돈을 찾으라는 말과 비슷하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관찰하고, 읽고, 쓰는 일은 꽤나 어렵고 전문적인 능력이다. 뉴스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향상되면 도움은 되겠지만, 그보다는 언론의 관행이 바뀌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이다.

사실 필자는 현장에 있는 기자로서 한국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승-전-뉴욕타임스로 마무리되는 이야기에 신물이 나 있다. 한국과 외국의 언론 환경이 다른데 그 차이는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만 가지고 비교를

당하니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았다. 그래서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한국 언론도 마음만 먹으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언론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면 그 방향은 투명함과 친절함이 되어야 한다. 경제부에서 국제경제를 담당하면서 외신을 매일 볼 때 느꼈던 것은, 한국은 영미권보다 웬만한 서비스는 다 친절한테 뉴스만큼은 영미권이 압도적으로 친절하다는 점이다. 특히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있어서 사실을 사실답게, 의견은 의견답게 보이도록 돕는 시각적, 문체적 장치가 눈에 띄었다.

우선 해외 언론의 경우, 강하게 반영된 기사는 클릭하기 전부터 'Analysis'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다. 그 옆에 누가 분석했는지 이름이 표기되기도 한다. 이는 뉴스 이용자에게 읽기 전부터 이 기사에는 의견이 상당히 가미되어 있으니 감안해서 읽으라는 신호가 되어 준다. 반면에 한국 뉴스를 읽다 보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등의 표현을 쓰면서 외신의 분석 내용을 사실처럼 인용하곤 한다. 한국 언론은 외신 기자의 의견조차 '사실을 말할 권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를 인용할 때도 해외 언론은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때로 글의 흐름을 방해한다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설명한다. 한국 기사가 '홍길동 한국대학교 OO학과 교수'라고 표기하는 것만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뉴스 이용자에게 납득시키는 것과는 달랐다.

또 해외 기사는 외부 자료를 근거로 삼을 때 가능한 하이퍼링크를 통해 그 자료를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연결해 놓는다. 한국 기사는 '통계청에 따르면'과 같이 불친절하고 부족하게 설명해, 뉴스 이용자가 이를 직접 찾아해매는 수고를 하느니 차라리 확인을 안 해보게 되는 것과는 다르다.

외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 언론이 고민 중인 문제를 먼저 겪었기 때문이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객관성의 신화가 갈수록 힘을 잃으면서 언론의 사실을 말할 권위가 예전 같지 않고,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을 극복할 방법은 더 친절하고 투명하게 뉴스를 제공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친절함과 투명함은 한국 언론이 따라 하는 데 기술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미 시도하고 있는 언론사도 있어서 반갑다.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기사 원문을 보면 본문에서 기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진

하게 표시하거나, 색깔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고, 어려운 용어에 각주를 다는 등의 시도가 눈에 띈다. 아쉽게도 포털에서 기사를 볼 때는 이런 효과가 대부분 삭제된다.

누군가는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는 ‘기능’이 아닌 뉴스 이용자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다. 당장 회사에서 기사를 쓸 때마다 이러한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시킨다면 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번거롭고 하기 싫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으로 뉴스 이용자에게서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해야만 한다.

요즘 차로 국내 도로를 달릴 때 갈라지는 구간에서 분홍색, 초록색으로 그려진 유도선을 만나면 길을 잘못 들어가서 빙빙 돌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안심이 된다. 이런 유도선을 그리기 시작한 게 한국이 처음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사실과 의견을 친절하게 구분하는 것도 마음만 먹는다면 한국 언론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극단적인 발상일 수 있지만, 지금 한국 언론은 기사 내에서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문장에 분홍색 유도선이라도 그려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기사 하단에 투명성 보고를 추가해 보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 사실과 의견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느냐는 압력이 들어올 때, 어떤 사실을 확인했거나 확인하지 못했고, 무엇을 판단했으며, 무엇을 추정했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될 수 있다. 왜 이 아이템을 발제했고, 어떻게 취재했으며, 편집 과정은 어땠고, 어떤 점이 후속 취재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지 등을 서술해 놓는다면 뉴스 이용자의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신뢰 역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글의 서두에서 말한 ‘기자가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규율’과 ‘맥락과 해석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 사이의 딜레마가 이야기를 풀어가며 다소 해소된 것 같다. 필자를 포함해 많은 언론인이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격언으로 ‘언론인이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방법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쓸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좋아한 이유는 기자들이 쓰는 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이용자들은 믿어야 한다는 권위를 담고 있어서였다. 하지만 이 말을 이제 이렇게 고쳐야 할 것 같다.

‘언론인이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투명하고 친절한 방법으로 취재하고 쓸 수 있다.’

앞으로 언론의 사실을 말할 권위는 투명성과 친절함에서 기인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취재했고, 판단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줄 테니 뉴스 이용자들이 직접 확인해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언론이 신뢰받을 것이다.

물론 11년 차 기자인 필자는 당장 내일 아침 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려 해오던 여러 관행을 따를 것이고, '야마'를 세우려 틀 짓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과 의견 사이를 오가는 수많은 판단을 할 것이다. 이 글의 비판과 제언은 사실 자기반성에서 출발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질 수는 없다. 다만 내가 다짐하는 동시에 동료 기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제 그 고민의 흔적을 하나씩이라도 투명하고 친절하게 뉴스 이용자에게 공개해 나가자는 것이다. 🙏

02

플랫폼·인공지능 시대 사실과 의견의 경계 : 탈경계 뉴스 환경에서 저널리즘 규범의 재구성

이완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콘텐츠대학 명예교수



1. 서론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첫 장에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이야기가 나온다. 여섯 살 어린아이가 거대한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을 그린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 제시다. 아이는 이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라고 대답한다. 이는 해석이자 의견이다.

아이가 그린 그림은 모자가 아니라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다. 아이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다시 그려 보여준다. 이것 역시 또 하나의 사실 제시다. 그럼에도 어른들은 여전히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겉모양만 보고 그것을 모자로 해석한다.

이 장면은 사실(fact)과 의견(opinion)을 구분하는 일이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같은 그림을 두고 한쪽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으로 인식하고, 다른 쪽은 ‘모자’로 해석한다. 대상은 같지만, 인식은 전혀 다르다.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뱀은 존재론적으로 하나의 사실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 사실을 모자로 재해석한다. 존재에 대한 인식 대신 해석이 개입한 것이다. 그 결과 사실은 의견으로 재구성된다.

저널리즘은 바로 이 두 영역을 구분하려는 제도적 장치 위에서 발전해 왔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근대 저널리즘의 핵심 규범 가운데 하나였다. 같은 대상이라도 사실과 의견은 차원이 서로 다르다. 사실은 검증 가능한 정보인 데 반해, 의견은 해석과 평가의 영역에 속한다. 이 둘은 뉴스 장르의 분리를 통해 제도화되었다. 스트레이트 뉴스는 사실 전달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사실과 칼럼은 의견 표현의 장르다. 전통적 신문 체제에서 독자들은 기사 형식만으로도 정보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르적 구분은 단순한 편집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저널리즘의 인식론적 원칙을 반영한다. 사실은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의견은 별도의 공간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근대 언론이 공적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뉴스 환경에서는 이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플랫폼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에서는 기사 장르의 구분이 약화된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사실과 의견이 혼합된 정보가 구분 없이 확산된다. 뉴스 기사 역시 내부적으로 사실과 해석이 결합된 형태로 생산된다. 디지털 뉴스 환경에서는 속보성이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면서 사실 확인 과정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기사는 사건의 사실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보다 특정 행위자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데 더 비중을 둔다.

전통적으로 뉴스는 사건의 사실을 설명하는 정보 체계다. 그러나 오늘날 뉴스는 다양한 행위자의 발언을 중계하는 담론 체계의 성격으로 바뀌었다. 뉴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장치라기보다 누군가의 발언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뉴스의 이런 변화는 저널리즘의 정보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실 중심 정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해석과 주장, 평가가 포함된 의견 중심 정보는 빠르게 증가한다. 뉴스 공간에서는 이제 사실과 의견의 비중이 역전되었다. 플랫폼 환경은 이러한 변화를 더 앞당겼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사실과 의견이 뚜렷한 구분 없이 함께 유통된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사실보다 의견이 더 지배적이다. 사실은 주변으로 밀려나고 의견은 넘쳐난다. 플랫폼은 정보의 진위보다 흥미와 반응을 기준으로 콘텐츠를 확산시킨다. 사실과 의견이 뒤섞이면서 그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최근 등장한 인공지능(AI) 기반 뉴스 역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생성형 AI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문장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 정보와 해석적 표현이 같은 언어 구조 속에서 결합된다. 알고리즘은 사실을 검증하는 판단 체계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문장을 조합하는 생성 시스템이다. AI가 생성하는 뉴스 텍스트에서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정보의 형식은 객관적 문장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다양한 해석과 담론으로 재구성된다.

이러한 변화는 저널리즘의 전통적 규범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여전히 유효한가?’, ‘플랫폼과 AI 시대에는 객관주의 대신에 새로운 규범이 필요한가?’ 이 글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뉴스 환경에서 사실과 의견의 경계가 왜 모호해졌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저널리즘 규범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과 AI 기반 뉴스 생산 환경이 사실과 의견의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근대 저널리즘이 구축해 온 사실 중심 규범의 의미를 다시 평가한다.

2. 사실과 의견의 가능

저널리즘에서 사실 중심 보도는 근대 언론 제도의 핵심 규범이었다. 뉴스의 사실성 규범은 20세기 초 상업신문 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언론학자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 1922)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이 사회 현실을 직접 경험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시민들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사회를 이해한다. 따라서 언론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지닌다. 언론은 현실을 완전히 재현할 수는 없지만, 공적 의사결정을 위한 신뢰 가능한 사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뉴스의 객관성(objectivity)은 현대 저널리즘의 중요한 전문적 규범이다. 언론학자 미첼 섯슨(Michael Schudson, 1981)은 객관성 규범을 사실 검증, 균형성, 그리고 기자 의견의 절제로 설명한다.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토대인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다. 뉴스는 사실 전달을 담당하고, 의견 표현은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논평 장르에서 이루어진다.

사실은 변하지 않는 명제다. 적어도 존재론적 차원에서는 그렇다. 저널리즘 영역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인정받아 왔다. 영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찰스 스콧(C.P. Scott)은 일찍이 “의견은 자유이지만, 사실은 신성하다(the comment is free, but facts are sacred)”라는 말로 사실의 가치를 강조했다. 전통적 저널리즘은 사실을 의견과 명확히 구분하고, 사실을 의견보다 우선적 가치에 두었다.

그러나 오늘날 뉴스 환경에서는 사실과 의견이 혼합된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더 많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객관주의 저널리즘은 이제 큰 도전에 직면했다. 전통적으로 뉴스는 사실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를 토대로 형성되

어 왔다. 이러한 믿음은 오랫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사실은 기사로 보도(reporting)하고, 의견은 논평(commentary)으로 제시한다는 원칙이다. 신문과 방송의 보도 규범 역시 이 원칙 위에서 형성되었다. 기자는 사실을 전달하고 논평가는 의견을 제시한다. 뉴스와 논평은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분리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존재했다.

그러나 언론학 이론에 따르면 뉴스는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뉴스는 선택과 구성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언론학자 게이 터크만(Gaye Tuchman, 1978)은 뉴스의 객관성을 '전략적 의례(strategic ritual)'로 설명했다. 기자들은 다양한 출처를 인용하거나 상반된 의견을 병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객관성을 실천한다. 이러한 방식은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전문직적 전략이다. 동시에 그것은 뉴스가 완전히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언론은 사회 현실의 모든 사건을 다 보도할 수 없다. 따라서 뉴스는 선택과 배제의 과정을 거쳐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현실은 특정한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뉴스는 사실을 전달하는 정보 체계이지만, 동시에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뉴스는 사실과 의견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 뉴스의 해석성과 의견성은 프레임링(framing) 이론을 통해 설명되어 왔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 1974)은 사람들이 사회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특정한 해석 틀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이를 언론 연구에 적용한 로버트 엔트만(Robert Entman, 1993)은 뉴스 프레임링을 문제 정의, 원인 규정, 도덕적 평가, 해결책 제시와 같은 일련의 구조적 과정으로 설명한다. 뉴스는 단순한 사실 전달체계가 아니라,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 과정이다. 사실 정보와 해석 요소가 결합하는 이러한 이중 구조는 뉴스에서 사실과 의견의 경계를 구조적으로 모호하게 만든다.

3. 사실과 의견 경계의 모호성

오늘날 새로운 미디어 기술환경은 사실과 의견 경계의 모호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환경의 등장은 정보 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소셜미디어는 정보 생산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었고, 생성형 AI는 텍스트 생산 능력을 급격히 확장시켰다. 뉴스 형식의 콘텐츠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한다. 유튜버를 포함해 뉴스 생

산자 역시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단순한 정보량의 증가가 아니다. 뉴스 속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경계 또한 불명확하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뉴스와 해설, 주장, 개인 의견이 하나의 콘텐츠 안에서 뒤섞여 사실과 의견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텍스트 역시 사실 정보와 일반적 설명, 해석적 서술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신문과 방송 등 전통 언론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나타난다. 사실 중심의 스트레이트 기사에도 점차 해석과 논평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사실 뉴스는 갈수록 의견 뉴스와 유사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오늘날 뉴스가 사실과 의견이 결합된 새로운 서술 형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널리즘은 사실과 해석이 결합된 ‘해석적 사실 서술(interpretive factual narrative)’이 중심을 이루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저널리즘의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미디어 융합, 그리고 정치적 정파성이 심화된 오늘날의 저널리즘 환경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여전히 유효한 규범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2018년 미국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흥미로운 조사를 실시했다. 뉴스 미디어의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사람들의 구분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그 결과 모든 진술을 정확하게 구분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4분의 1이 대부분 또는 전부를 틀렸다. 흥미로운 점은 조사에 사용된 문장들이 모두 정치적 의미를 지닌 진술이었다.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모두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에 유리한 진술일수록 그것을 ‘의견’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했다. 판단 과정에서 자기중심적 확증편향이 강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4. 사실과 의견 구분에 대한 철학적 논의

사실 진술과 의견 진술을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식론적 차원에서 사실과 의견은 다르다. 철학적 인식론에서는 두 개념의 차이를 진리 판단의 가능성에서 찾는다. 사실 진술(factual statement)은 경험적 증거와 관찰, 검증을 통해 참과 거짓을 판단한다. 반면에 의견(opinion)은 가치 판단과 해석, 평가가 포함된 진술로 반드시 참과 거짓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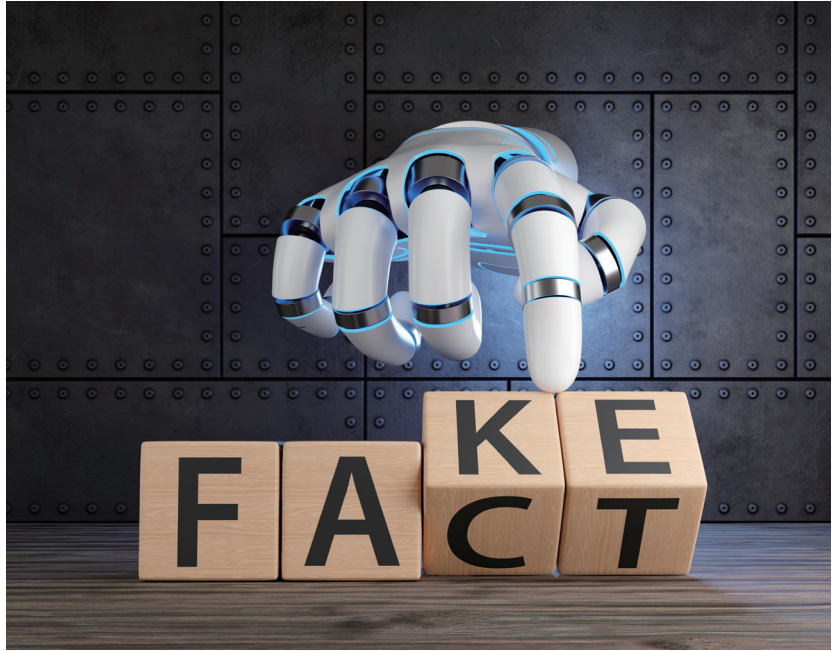
예를 들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4년에 2.1%였다”라는 주장은 사실

진술이다. 이 진술은 통계 자료를 통해 참과 거짓의 판별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매우 건강하다”라는 말은 평가적 의견 진술에 속한다. 이 진술은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이처럼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의 차이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과학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의 ‘반증 가능성(falsifiability)’ 개념은 이러한 구분에 이론적 단서를 제공한다. 반증 가능성이 있는 진술은 사실 진술에 가깝고, 반증 불가능한 가치 판단은 의견에 가깝다.

사실은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현실 속에서 존재한다. 사실은 대체로 참일 가능성이 높지만, 항상 참일 수는 없다. 예컨대 ‘거짓 사실’이나 ‘대안적 사실’이라도 공적으로 유포되면 그것은 사회적 현실 속에서 하나의 ‘현존하는 사실’이 된다. 의견 역시 마찬가지다. 참에 근거한 의견도 있고, 거짓 사실에 근거한 의견도 존재한다. 이처럼 사실과 의견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사실의 공표가 자유로운 것처럼 의견의 표현 역시 자유로운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두 개념의 차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실과 의견은 본질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자연적 범주라기보다 일종의 개념적 구분에 가깝다. 과학철학에서 말하는 자연종(natural kinds)과 유사하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실과 의견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제시한 사례를 분류하는 일도 비교적 쉽게 수행한다. 그러나 두 범주를 구분하는 기준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할 때는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일반적으로 사실은 증거에 의해 검증될 수 있는 진술로 이해된다. 사실은 참과 거짓의 판별이 가능한 영역으로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토대가 된다. 반면에 의견은 작성자의 감정, 태도, 가치 판단이 포함된다(Hutchins & Kelley, 2023). 의견은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영역으로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보다 개인의 관찰과 해석을 반영한다. 사실은 증명 가능하며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개인적 믿음에 근거한 의견은 이러한 방식으로 검증되기 어렵다. 누구나 특정 의견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사실처럼 증명하거나 반박하기는 쉽지 않다. 의견은 참이나 거짓의 판정 대상이라기보다 믿음과 태도, 판단을 표현하는 행위다. 그러나 의견은 때로 거짓을 사실처럼 제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과 의견에 대한 이러한 대립적 평가는 여러 오해를 내포한다. 먼저 사실과 의견을 완전히 다른 범주로 설정하는 문제다(Lammer-Heindel, 2016). 이는 일종의 범주 오류(category mistake)에 가깝다.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세계의 상태를 의미한다. 세계의 상태는 특정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반면 의견은 정신적 현상이며 개인의 마음속에 형성된 믿음이다. 사실은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으며, 의견은 마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Hutchins & Kelley, 2023).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진술은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는 명제다. 어떤 진술이 사실 진술인지 여부는 그것이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것은 진술의 성격에 관한 판단일 뿐, 사실 자체는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 국가를 공습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또 다른 예로 대통령 공소 취소와 관련한 정치적 거래설과 같은 주장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주장 역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누구나 이를 주장하거나 의견으로 표현할 자유는 있지만, 그것이 곧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견 진술을 사실로 수용할지 여부는 결국 개인의 판단에 달린 문제다. ‘의견의 사실화(the factualization of opinion)’는 바로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형성된다. 예를 들어 언론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 있더라도, 특정 정치인이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행위적 사실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발언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 인식론적 측면에서 '사실'이 된다. 의견은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문제다. 많은 의견이 윤리적, 정치적, 미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일정한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모든 의견이 가치 판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자.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입장은 참이나 거짓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의견'에 해당된다. 신의 존재는 경험적 방법으로는 그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참과 거짓의 판단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신의 실존 여부는 현재의 인간 인식 체계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 다른 논점은 사실이 증명 가능한 반면에,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해석 역시 지나치게 단순하다. 공적 토론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의학적 사례를 가정해 보자. 의사가 특정한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했을 때 환자는 종종 다른 의사에게 ‘다른 의견(second opinion)’을 구한다. 두 번째 의사의 판단 역시 의학적 사실과 전문 지식에 근거한다. 두 전문가가 서로 다른 진단을 제시하더라도 환자는 두 의견을 모두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두 의견이 동시에 참일 수 없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즉시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의견은 경험적 사실과 전문 지식, 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실증적 사실을 제시하거나 권위 있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다. 따라서 의견 역시 일정한 증거와 논증의 과정을 배제하지 않는다.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은 인간이 언어를 통해 그 상태를 기술하는 표현 방식이다. 따라서 어떤 사실이 마음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설명하는 진술은 인간의 인식·언어·관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물가가 올랐다”는 말은 현존하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러나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표현은 사실에 기반한 의견 진술에 가깝다. 여기에는 “크게”라는 평가 기준과 해석이 포함된다. 이처럼 사실을 기술하는 과

정에서도 선택, 범주화, 강조의 방식이 개입하며 일정한 주관성을 피할 수 없다.

사실 진술조차 관찰자의 인식 틀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관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과학철학에서는 이를 ‘관찰의 이론 의존성 (theory-ladenness of observation)’이라고 부른다. 관찰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가 아니라 관찰자의 인식 틀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해석의 과정이다.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Thomas Kuhn, 1962)은 과학적 관찰조차 연구자의 이론적 틀과 패러다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았다. 같은 현상도 어떤 개념 체계와 설명 틀로 관찰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술된다. 사실 진술 역시 완전히 중립적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사실 진술은 또한 언어적 구성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현실 세계의 사건은 대체로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를 언어로 요약하고 범주화하여 표현한다. 기자들이 뉴스를 작성할 때 수행하는 언어적 구성 과정도 마찬가지다. 기자는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무엇을 사실로 선택할 것인지, 어떤 맥락 속에서 설명할 것인지, 어떤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판단한다. 예를 들어 경제 보도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표현과 “경기가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표현은 같은 데이터를 근거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 방식이 달라지면 독자가 받아들이는 해석은 달라진다.

저널리즘에서의 사실 구성 과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뉴스의 사실성(facticity)은 현실을 단순히 반영하는 결과라기보다 일정한 사회적 구성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언론학자 테크만은 뉴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조직의 규범과 절차 속에서 구성된 현실이라고 설명한다. 기자는 어떤 사건을 뉴스로 선택할 것인지, 어떤 자료를 인용할 것인지, 어떤 맥락을 강조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선택 과정은 사실 진술 속에도 일정한 해석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저널리즘에서 사실과 의견

사실과 의견은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분리된 범주가 아니었다. 오늘날 저널리즘에서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 당연한 규범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이러한 원칙은 비교적 후대에 형성되었다. 19세기 초기 신문은 강한 정파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신문은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념을 지지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매체였다. 사실 기사와 논평의 구분도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았다. 사실 보도와 정치적 주장, 논평이 같은 지면에서 함께 제시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이 시기 신문의 중요한 기능은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고, 확산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핵심 규범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 초 신문 산업이 상업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신문은 특정 정치 세력의 기관지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독자층을 확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객관주의적 저널리즘이 중요한 직업 규범으로 등장했다. 뉴스는 사실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었고, 논평과 의견은 별도의 장르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후 저널리즘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오랜 직업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에도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로 사실성과 객관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그러나 뉴스 생산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사실과 의견을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렵다. 기자는 사건을 선택하고, 어떤 사건이 중요한지 판단하며, 어떤 맥락에서 설명할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뉴스는 일정한 해석과 주관성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언론학자 허버트 갠스(Herbert J. Gans, 2004)는 뉴스를 단순한 사실 기록이 아니라 사회적 선택의 결과물로 설명한다. 뉴스로 보도되는 정보는 여러 단계의 선택 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일정한 해석과 가치 판단이 개입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스의 객관성 역시 완벽한 사실 재현을

의미하지 않는다. 터크만이 제시한 ‘전략적 의례(strategic ritual)’는 기자가 자신의 주관적 개입이나 해석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규범적 장치에 가깝다. 기자의 주관적 의견을 제3자의 말을 인용해 객관적으로 포장하는 식이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사실 정보’만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 많은 사회 문제는 개인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시민이 인식하는 현실의 상당 부분이 언론의 재해석을 통해 형성된다. 언론 보도 과정에 사실의 전달 못지않게 의견이나 해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미국 언론 사상가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은 이를 ‘머릿속의 그림(pictures in our heads)’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Arnold-Forster, 2023 참조). 사람들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해석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인식 틀을 형성한다. 따라서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사회 현실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기자는 단순한 사실 기록자라기보다 인식 틀을 제공하는 해석자에 더 가깝다.

수많은 사건 가운데 어떤 사건이 뉴스가 될지는 궁극적으로 기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기자는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고 관련 맥락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기자의 개인적 의견이나 해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언론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의제설정(agenda setting) 이론 역시 언론이 시민들에게 사회 현실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제설정 이론의 창시자인 맥스웰 맥콤스(McCombs & Reynolds, 2009)에 따르면 언론은 특정한 사회 문제를, 특정한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이 그 문제를 중요한 공적 이슈로 평가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뉴스 작동 과정은 단순한 사실 전달 효과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 문제를 해석하고 의견 형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뉴스는 사실을 전달하는 동시에 현실을 해석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6. 플랫폼·AI 저널리즘 환경에서 사실과 의견

오늘날 뉴스 환경의 변화는 사실과 의견 구분이라는 전통적 저널리즘 규범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뉴스 생산의 장벽을 크게 낮추었지만, 동시에 저널리즘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약화시켰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강한 주장이나 감정적 메시지를 더 많이 노출한다. 그 결과 사회적 공론장은 점차 사실 중심이 아닌, 의견 중심 콘텐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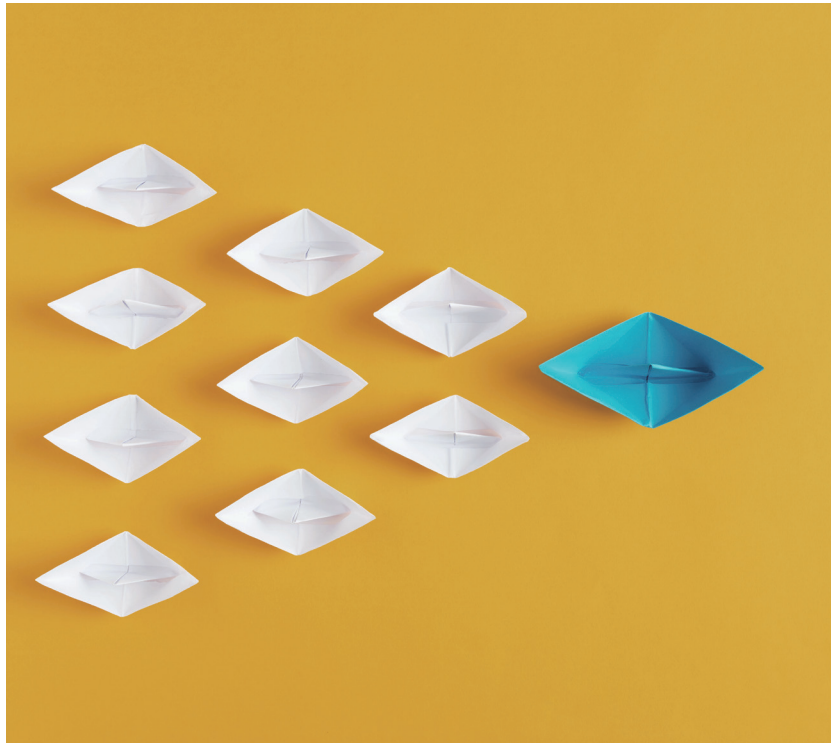
의해 잠식된다. 사실 중심 보도보다 해석과 논평이 결합된 의견 중심 콘텐츠가 더 빠르고, 더 넓게 확산된다.

디지털 뉴스 시장에서는 속보 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론사는 늘 다른 매체보다 먼저 뉴스를 전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기사 생산 시간은 크게 단축되었고, 사건의 사실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대신 특정 행위자의 발언을 인용하거나 전달하는 ‘said 저널리즘’이 지배적인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자 랜스 베넷(Lance Bennett, 1990)은 이러한 현상을 ‘인덱싱(indexing)’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인덱싱 이론에 따르면 뉴스는 사건 자체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거나 분석하기보다, 정치 행위자들의 발언 범위 안에서 내용을 구성한다. 그 결과 사실 검증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다양한 주장과 발언을 전달하는 기능은 반대로 강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뉴스 생산 구조에 있어 중요한 전환을 의미한다. 전통적 저널리즘에서 뉴스는 사건을 설명하는 정보 체계였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뉴스는 다양한 행위자의 발언을 전달하는 담론 체계로 변화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추천한다. 플랫폼의 이런 구조적 특징은 의견 중심 콘텐츠의 확산을 촉진한다. 그 결과 사실 중심 뉴스보다 해석과 논평이 결합된 의견이나 주장 콘텐츠가 더 널리 확산된다.

최근 등장한 생성형 AI 역시 사실과 주장의 경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생성형 AI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한 뒤 확률적 방식으로 문장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 정보, 일반적 설명, 해석적 서술이 하나의 문장 안에서 혼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텍스트는 순수한 사실 정보라기보다 사실과 설명, 해석이 결합된 복합형태로 제시된다. 이러한 AI 기반 정보 환경에서는 사실의 단순 전달보다 정보의 재구성 and 재조합이 강화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사실 정보이고 어떤 부분이 해석이나 의견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7. 결론

기자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다. 기자는 시민을 대신해 사회 문제를 해석하는 해설자이자, 공론장의 분위기와 방향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논평가다. 이러한 점에서 해석적 저널리즘(interpretive journalism)과 팩트체크 저널리즘(fact-checking journalism)은 기존



저널리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을 제시한다(Birks, 2021).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실적 주장들이 논증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사용이 적절 한지, 그리고 어떤 숨겨진 전제가 존재하는지를 드러내 보인다. 이른바 ‘탈 진실(post-truth)’ 정치의 시대에 ‘의견 저널리즘’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저널리즘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복잡한 현실을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 사상가 리프만 역시 복잡한 정치 현실의 진실을 대중이 스스로 파악하도록 맡겨 두어야 한다는 사실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신 언론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해석과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토론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널리즘 역사 초기만 해도 객관성 규범은 분명한 기능을 수행했다. 그것은 기자 집단 내부의 직업적 결속을 강화하고, 편집자를 통한 조직적 통제를 유지하며, 다른 사회 집단과의 경계를 설정하는 장치였다. 저널리즘의 객관성은 언론사 내부의 게이트키퍼(gatekeeping)와 확인 절차라는 전문

적 관행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절차는 검증되지 않은 의견 표명을 하는 다른 집단과 저널리즘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작동했다. 사실을 의견과 구분하려는 원칙 역시 이러한 제도적 맥락 속에서 자리 잡았다.

객관성 규범의 핵심은 과학적 진리를 직접 탐구하거나 특정 의견을 주장하는 데 놓여 있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공정성(impartiality)’이라는 규범이 자리했다. 공정성은 사실에 토대를 두고 불편부당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견이나 주장은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이상과 긴장을 형성한다. 사실 중심 보도를 강조해 온 전통적 객관주의 저널리즘이 의견의 개입을 경계해 온 이유도 이와 같은 규범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미디어 생태계는 크게 변화했다. 플랫폼 중심의 정보 환경에서는 전통적 게이트키퍼 절차가 약화되었고, 사실과 의견 사이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는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로 다양한 의견을 노출시키며, 정치적 양극화를 증폭시킨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널리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역시 흔들린다. 하지만 언론 불신을 단순히 기자의 주관적 해석 문제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늘날 많은 뉴스 수용자들은 해석이나 의견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객관적 진리’라는 주장에 더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언론이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다. 결국 의견이나 주장 이전에 보도 사실 그 자체를 의심해 왔다. 일부 연구자들은 음모론과 허위 신념의 확산 역시 단순한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주의 저널리즘’이 전제해 온 인식론적 토대에 대한 거부와 관련된 현상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변화만 놓고 보면 사실과 의견의 경계를 강조해 온 전통적 논의가 무의미해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정보 생산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콘텐츠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록 사실 검증의 가치는 더 중요하다.

“의견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 다시 강조될 수밖에 없다. 사실과 의견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무엇이 사실인지 설명하려는 노력, 무엇이 해석인지 구분하려는 노력, 그리고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적 토론은 사실 기반 정보 위에서만 성립한다. 저널리즘 영역에서 의견은 최소한 사실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은 바뀔 수 없다.

플랫폼과 인공지능 시대에도 저널리즘의 '사실 중심주의'는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원칙이다. 시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저널리즘이 포기할 수 없는 공적 책임에 속한다. 사실과 의견의 경계는 고정된 규칙이라기보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규범에 가깝다. 그럼에도 두 영역을 구분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으로 남는다. 오늘날 공론장의 문제는 『어린왕자』 첫 장의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군가는 여전히 모자를 보고 있고, 누군가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본다. 결국 저널리즘의 미래는 하나의 질문을 향한다. 수많은 주장과 의견이 넘쳐나는 시대에도 무엇이 사실인가를 끝까지 묻는 일이다. 📖


 참고 문헌

- Arnold-Förster, T. (2023). Walter Lippmann and public opinion, *American Journalism*, 40(1), 51–79.
- Bennett, W. L. (1990). Toward a theory of press–state, *Journal of Communication*, 40(2), 103–127.
- Birks, J. (2021). Evolving journalism norms: Objective, interpretive and fact-checking journalism. In *The Routledge companion to political journalism* (pp. 62–71). Routledge.
- Hutchins, D., & Kelley, D. (2023). Fact and opinion, *Informal Logic*, 43(3), 352–368.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s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McQuail's reader in mass communication theory*, 390, 397.
- Gans, H. J. (2004).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Harvard university press.
- Kuhn, T. S. 1962/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1/2 e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
- Lammer-Heindel, C. (2016). Facts and opinions, *Phylosophy Now*, 23–25.
- Lippmann, W. (1922). The world outside and the pictures in our heads. *Public opinion*.
- McCombs, M., & Reynolds, A. (2009). How the news shapes our civic agenda. In *Media effects* (pp. 17–32). Routledge.
- Schudson, M. (1981).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s*. Basic books.
- Tuchman, G. (1978). The news net, *Social Research*, 253–276.

03

사실과 의견 구분 법리의 최근 동향

박종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실과 의견 구분의 어려움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 정치질서에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¹⁾ 사상의 자유시장으로서 민주적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사상이나 의견도 통제되지 않은 채 활발하게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면서 인격을 발현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 의견은 강한 헌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의견이 아닌 사실에 대한 진술은 그것이 그릇된 경우 사회적 위험이나 법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주관적 견해인 의견 표현의 경우보다 덜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²⁾

사실과 의견에 대한 차등적 대우는 법률에도 반영되어 있다. 우리 형사상 명예훼손의 성립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공통적으로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고의 혹은 과실로 이러한 행위를 행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명예훼손) 역시 성립한다. 문제된 표현이 사실적시의 형태를 지녀야 비로소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한 논의를 수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은 명예훼손성이 부정되는데, 문제는 명예훼손 관련 사안에서 어떠한 표현이 사실인지 혹은 의견인지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흔히 사실의 진술은 사실관계 자체의 전달로서 그 내용이 인식과 현실 간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진위가 판단되는 경우라고 이해된다.³⁾ 즉 사실의 진술은 특정 사항에 대한 구체화된 진술로서 표현의 진위 여부가 증명될 수 있는 반면, 의견 표현은 가치척도에 따른 판단의 표현이며 존재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로서 옳고 그름이 문제될 뿐이라고 이해된다.⁴⁾ 의견은 일정 사항에 관한 가치판단 내지 평가의 진술로 당부(當否)나 선악(善惡) 또는 미추(美醜)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타인 혹은 사회의 평가 대상이 된다. 결국 사실은 진위와 관련되고 의견은 당부와 관련된 진술 표현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무엇보다 사실은 존재 및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술이며 의견은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평가적 진술이

1) 이 글은 박중현, (2022),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실과 ‘의견’의 구별론에 대한 검토, 언론과 법, 21(3), 1-48, 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2) 한수웅, (2005),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 한국·독일과 미국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과 비판을 경하여, 저스티스, 84, 21-52.

3) 박용상, (2008), 명예훼손법, 현암사, 79.

4) 오윤식, (2015),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에서 사실진술과 의견의 구별, 그리고 허위성의 증명, 사법, 33, 197-245.

라는 점에서 개념적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상의 명백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가능성이 의심될 정도로 난해한 작업임이 분명하다.⁵⁾ 대부분의 진술은 사실과 의견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구성되기 마련이며, 의견처럼 보이지만 전제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방식의 진술인 경우 이를 의견이라 단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발생한다. “사실은 의견의 출발점이고, 사실의 주장이 의견 표현으로 이전되는 것은 (구분이 어려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continuum)”⁶⁾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구분에서부터 명예훼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표현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 여부 역시 결정될 수 있기에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한 논의는 일상적 표현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논의이며 우리 대법원은 민·형사상 명예훼손 사건들에서 사실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 기준을 나름 제시해오고 있다.

2.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한 대법원의 논의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대법원이 처음 논의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해석과 관련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⁷⁾ 특히 1996년 판결에서는 사실과 의견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⁸⁾ 1998년부터 대법원은 형사상 명예훼손죄 판단과 관련하여서도 공직선거법 사안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 시작하였다.⁹⁾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판단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구분 기준을 활용하였다.¹⁰⁾

실제 사실의 진술에 발화자의 주관이나 일정한 가치판단이 포함될 수도 있고 의견의 진술에 사실적 요소가 포함될 수도 있어, 이들을 깔끔하게 분

5) 신평, (2004), 명예훼손법, 청림, 189-190.

6) 이는 후술하게 될 올만(Ollman) 판결에서 D,C,연방항소법원의 로빈슨(Spottswood W, Robinson) 판사의 별개 의견에서 제시된 표현이다.

7)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도1693 판결.

8)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9)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10)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리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형사상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사실적시를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의견)은 명예훼손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하고, 어떠한 진술이 의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지표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확보나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 보장 차원에서 분명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대법원은 1996년 판결에서의 복합적인 검토방식을 정립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최근 10년 정도의 대법원 판결 중 사실과 의견의 구분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사안별로 범주화하여 그러한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

1) 출판물 및 학술적 비평에서의 논의

먼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법원은 1996년 판결에서의 판단 기준을 활용하며 특히 글의 문맥에 따라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¹²⁾ 해당 사건에서는 타인의 저술 내용을 비판하며 “임나일본 부설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는 취지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쟁점

11) 헌법재판소도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5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12)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겉으로 보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 의도, 논리적 흐름, 전개 방식 등을 종합할 때, 평균적 독자의 관점에서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으로 이해된다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덧붙여 대법원은 비판의 여지가 있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이를 성급하게 사실의 적시로 단정하여 학문적 논쟁을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는 비평이라는 글의 형식이 갖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함축적·단정적 문장 속에 담긴 저자의 가치 판단을 우선시한 결과였다.

또 다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법원은 논문 유사 연구물에서의 진술을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¹³⁾ 중중의 뿌리와 실존 인물 여부를 다룬 책에서 “후손들이 실존성을 조작하였다”고 기술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앞선 식민사관 판결의 구분 기준을 재확인하며, 해당 서적이 문헌을 소개하고 자료를 인용하는 논문 유사 연구물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주관적 견해를 개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 사실적 단정을 사용했다면, 독자들은 이를 사실의 적시가 아닌 저자의 주장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대법원은 강조하였다.

또한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법원은 출판물에서의 표현의 전체 맥락, 그리고 학술적 연구로서의 가치 등을 강조하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였다.¹⁴⁾ 대법원은 해당 도서에서 조선인 위안부를 ‘매춘’이나 ‘일본군의 동지’로 묘사하고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을 부정한 것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이를 학문적 의견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구에서의 의견 표현을 사실의 적

¹³⁾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¹⁴⁾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대법원은 조선인 위안부라는 집단은 규모가 크고 피해 양상이 다양하여 특정 개인을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기에 이들에 대한 서술은 구체적 사실의 진술이라기보다 시대상을 정의하는 연구자의 종합적 해석(의견)에 가까우며, 저자의 표현이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사실을 암시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해당 문구들만으로는 그러한 명제를 곧바로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보았다. 학술적 주장을 명예훼손의 대상인 사실의 적시로 성급하게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 이는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의견 표명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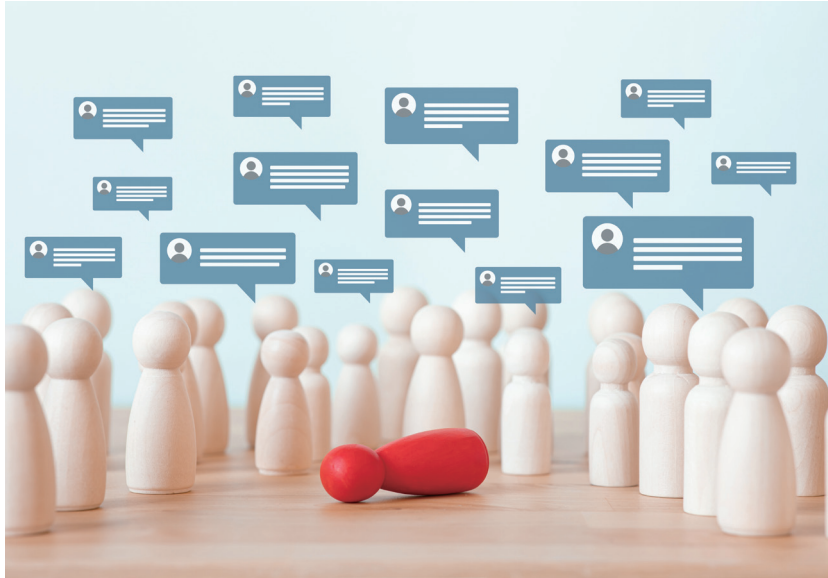
비슷한 맥락에서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의 명예훼손성을 부정한 사건도 있다.¹⁵⁾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하여 설치한 것에 대해 이는 일본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모델로 만들었으므로 역사왜곡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에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을 사실적시로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위해 1996년 판결의 복합적 기준을 인용하며 특히 해당 사건에서 제기된 주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노동자상이 일본 내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구출된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양자 간에 상호 유사성이 있다는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진위를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에서의 논의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1996년 판결의 복합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왔다. 먼저 대법원은 정치인을 향해 트위터에서 중북, 주사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¹⁶⁾ 대법원은 앞선 판결들에서 사용한 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준을 언급하며 이 중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가

¹⁵⁾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¹⁶⁾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종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무비판적 추종에서 북한에 우호적 태도, 반국가세력, 정부의 강경정책에 비판적인 견해 세력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면서 결국 종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또는 감수성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주사파'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인데, 사건에서 주사파라는 용어는 종북이라는 용어와 병렬적으로 사용되어 통합진보당의 운영이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 과정을 둘러싸고 특정 정치인들의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적 과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이는 의견 표현에 해당할 뿐이며 명예훼손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마약·보톡스 의혹을 제기한 발언에 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러한 표현을 사실의 적시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¹⁷⁾ 대법원은 전문(傳聞)이나 추측의 형태라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적시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유지했지만, 표현의 대상이 공적 인물일 경우 의혹 제기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면, 암시에 의한 사실적시로 평가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특

¹⁷⁾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별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사실적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며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을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는 것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¹⁸⁾ 대법원은 특히 사실과 의견의 구별과 관련해서는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표현의 전후 문맥과 그 표현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비유적, 상상적이어서 다의적이고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불특정되어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독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등으로 입장표명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라면 그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이라 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념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의견 또는 가치판단의 영역이고 사실적시가 일부 섞여 있더라도 전체적인 입장 표명이 결정적이라면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적시가 일부 섞여 있더라도 전체적인 발언 취지에 비추어 의견 표명이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입장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는 사안은 국정농단 주범의 은닉재산에 대한 발언의 명예훼손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다.¹⁹⁾ 대법원은 사건에서 문제된 발언을 하나씩 분리하고 전체 취지보다는 개별 발언별로 명예훼손성을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재산형성과 정 및 재산은닉에 대한 발화자의 의혹을 제기한 의견 표명과 구별하여 독일 검찰의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표현들은 사실적시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중복이라는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지만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입장도 최근 판결에서 감지된다. 특정 사이트에서 중복세력이 활동한다는 국정원 대변인 발언의 명예훼손성 여부 판단에서 대법원은 앞선 중복발언 판결에서처럼 중복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고 그에 따라 사건에서의 발언은 사이트에 대한 광의의 정치적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하였다.²⁰⁾ 다만 대법원은 이를 의견 표명이라 확정하지는 않았고 사실적으로 볼 수 있

18)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19)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42649 판결.

20)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사실적으로 볼지라도 특정인의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음을 증명하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만으로 명예훼손성 여부 판단을 사실상 마무리하던 기존 태도에 나타난 약간의 변화로 읽힐 수 있다.

3) 정리

대법원이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다루었던 이상의 판결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표현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표현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복합적 기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1996년 판결의 기준을 인용하여 활용할 뿐, 이러한 기준의 각 요소가 무엇을 의미하고 실제 판단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 명예훼손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판결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 판단에서는 이러한 기준 요소들을 선별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요소를 통해 불확정적이고 수사적 과장에 불과한 표현이라 보이는 경우를 의견으로 판단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문제된 표현이 사용된 문맥을 강조하여 전체적 취지가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함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적시가 포함되어 있어 보여도 의견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이러한 선별적 활용에 대해 대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둘째, 이러한 복합적인 기준에 따라 표현이 의견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사실적시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더 이상의 검토 없이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면제하였다. 이러한 과감하고 단순한 판단 방식은 물론 허위가 아닌 사실적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형법 체계를 고려한 판단이라 이해될 수도 있다. 진술 표현이 사실로 인정되는 순간 명예훼손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의 범주를 의도적으로 확대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형법 제310조로 인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실로의 인정이 바로 죄의 성립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을 낮추는 것만이 표현의 자유 보호와 구체적 타당성

을 확보하는 방안은 아닐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표현에서의 의견적 형식·요소에 기대어 명예훼손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적 대상에 대한 암시적 사실 역시 의견으로 판단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처럼 명예훼손 여부 판단을 사실·의견 구분론으로 치환하고 의견의 범주를 광범위하게 파악함으로써 결국 함축되거나 표명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성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몇몇 판결에서는 발언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발언마다 사실적시 여부를 판단하는 시도가 있었고 표현이 의견이 아닌 사실일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는 신중한 접근 역시 보여주고도 있다.

3. 미국에서의 사실과 의견의 구분 논의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인한 개인의 인격·명예 침해를 적절히 통제하며 표현의 자유 보호를 극대화하기 위한 논의가 명예훼손 관련 법리 발달로 이어져 왔다. 본래 코먼로(common law) 상의 민·형사적 논의 대상이었던 명예훼손 문제는 뉴욕 타임즈 판결²¹⁾을 기점으로 헌법적 문제로 전환되었고 명예훼손적 표현 역시 연방헌법 수정(증보)조항 제1조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며 헌법의 틀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생각이나 믿음, 의견 표출에 대해 강한 보호를 인정해 왔는데, 그에 따라 사실과 의견의 진술을 구분하여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달리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근간이 되는 코먼로 상의 대표적 법리가 공정한 논평의 특권(privilege of fair comment and criticism) 법리이다. 이는 공적 관심 사안이나 공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인물·단체·제도 등에 대해 선의(good-faith)로 이루어진 공정한 논평(비판)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으로서 명예훼손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법리이다.²²⁾ 이후 1974년 연방대법원의 거츠(Gertz) 판결은 표현의 명예훼손 가능성을 상당히 줄이는 법리적 변화를 가져왔다.²³⁾ 이 판결에서 법정 의견을 작성한 루이스 파월(Lewis Powell) 대법관은 “미연방헌법 수정(증보)조항 제1조에 의하면 그릇된 생각·사상(false idea)이란 있을 수 없다. 특정한 의견이 아무리 유해

21)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22) 조소연, (2000),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연세법학연구, 7(2), 65-91.

23)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1974).

해 보이더라도 이는 법관이나 배심의 양심에 따라 교정될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과의 경쟁 과정을 통해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의견을 명예훼손의 제소로부터 면제하는 의견 특권(opinion privilege) 법리를 제시하였다. 물론 거츠 판결에서는 의도된 거짓말이나 부주의한 오류에 따른 의견 진술은 공적 쟁점에 대한 토론에서 사회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헌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등 의견에 대한 보호의 한계를 설정하였지만,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의견 전반에 대한 특권을 인정한 법리로 이해되어 왔다.



다만 의견 보호만을 강조했다 뿐 사실과 의견의 구분 방식에 대해서는 거츠 판결이 침묵하였기 때문에 사법 실무적으로는 면책의 대상이 되는 의견을 사실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D.C. 연방 항소법원의 올만(Ollman) 판결이 마침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²⁴⁾ 다수의견을 작성한 케네스 스타(Kenneth Starr) 판사는 사실과 의견을 적

²⁴⁾ Ollman v. Evans, 750, F.2d 970(D.C. Cir 1984)(en banc).

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 전체(totality of the circumstances)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언어의 통상적 용법 또는 의미(the common usage or meaning of the language), 진술의 입증가능성(verifiability factor), 문제가 된 표현이 사용된 문맥(context and cautionary language), 그 표현이 행하여진 광범위한 사회적 정황(broader social context of the speech)의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전체적 상황 기준이라 불리는 이 기준에 따르면, 먼저 언어의 통상적 용법 또는 의미 요소에 의해 진술에서의 표현이 명확한 의미를 갖는지 다의적인지를 판단하여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의적이고 불확정적인 진술에서는 독자들이 사실을 찾아낼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는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술의 입증가능성 요소에 근거할 때, 입증 방법이 없는 진술은 사실 내용의 주장이라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문맥, 즉 해당 표현의 주변 진술들, 어조 등을 통하여 진술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정황, 예를 들어 사설란의 진술문이나 비평 서적과 같이 특정한 형태의 저작은 관행적으로 의견이라고 약속되므로 그 안에서의 표현을 사실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네 가지의 요소 중 어느 하나의 요소를 근거로 표현이 의견이라 평가될 수 있으면 의견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 기준은 결국 의견의 범위를 넓히고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해당 판결에 참여한 재판관들 사이에서 통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였고 지나치게 복합적인 판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예측가능성이 낮아 기준으로서 효용성이 없다는 비판 역시 받게 되었다.²⁵⁾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은 밀코비치(Milkovich) 판결²⁶⁾을 통해 의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사실과 의견 구분만으로 명예훼손 문제를 단순히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동시에 의견 특권 법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칼럼은 본래 의견에 해당하지만 사실적 주장이 포함된 경우 오히려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표현의 자유

²⁵⁾ Post, Robert C. (1990),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Public Discourse : Outrageous Opinion, Democratic Deliberation, and *Hustler Magazine v. Falwell*, Harvard Law Review, 103, 601-686.

²⁶⁾ *Milkovich v. Lorain Journal Co.*, 497 U.S. 1 (1990).

의 보장은 사실과 의견의 이분법이 아닌 그간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헌법상 여러 원칙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고 그 원칙으로는 첫째, 공적 사안에 대한 진술이 허위 사실을 함축하지 않는다면 헌법적으로 보호된다는 원칙,²⁷⁾ 둘째, 수사적 과장(rhetorical hyperbole)이나 상상적 표현(imaginative expression), 강렬한 특성 묘사(vigorous epithet) 등은 실제 사실 진술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보호된다는 원칙,²⁸⁾ 셋째, 뉴욕 타임즈 판결에서의 현실적 해악의 원칙²⁹⁾을 제시하였다. 다만 사실과 의견의 구분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명쾌하게 판단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밀코비치 판결은 퇴행적 산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주의 법원들은 여전히 진술의 문자적 의미, 사회적 맥락, 입증가능성 등 올만 판결의 기준을 통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명예훼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³⁰⁾

4.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넘어

특정한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하는 것은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사상의 자유시장론에 따라 의견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은 쉽게 인정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난무하는 복합적 진술들, 즉 의견적 부분과 사실적 부분이 혼재되거나 사실적 진술을 함축하는 의견 표명의 경우 의견적 부분에 방점을 두어 전체적으로 의견으로 파악하여 명예훼손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야 할지는 당연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만 판결의 전체적 상황 기준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오고 있는 우리 대법원 판결들에서는 판단 요소 중 어느 하나를 근거로 표현의 의견성이 확인되는 경우, 비록 사실적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의견으로 보아 명예훼손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표현이 의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여 표현의 자유 확대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헌법 제10조나 제21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서 강조하는 개인의 인격권·명예권의 보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한계의 필요성 논의는 이러한 판결에서 의미 있

27) Philadelphia Newspapers, Inc. v. Hepps, 475 U.S. 767 (1986).

28) Greenbelt Cooperative Publishing Association, Inc. v. Bresler, 398 U.S. 6 (1970).

29)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30) Smolla, Rodney A. (2018), Law of Defamation, 2nd ed, Thomson Reuters.

는 비중을 차지하기 힘들다. 특히 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준만을 진술의 명예훼손 여부 판단의 결정적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판결문을 깔끔하게 정돈하는 효과를 가질 뿐 결과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규범조화적 실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을 드러낼 뿐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실과 의견의 구분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난해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특히 이러한 구분 작업에 명예훼손 판단이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사안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잘 정돈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라는 헌법적 가치들 사이 균형 상태의 구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명예훼손 사안이 사실과 의견이 복잡하게 얽힌 표현을 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제는 진술의 형태보다는 진술의 명예훼손성에 집중하여 명예훼손 판단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

아동 보호를 위한 비공개 원칙, 공익보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 2023헌마1114 결정의 의미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1. 문제 제기: 공익보도와 비공개 원칙의 충돌

아동학대 사건 보도는 대개 불편하다. 사건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아동의 얼굴이 등장하는 순간, 공익보도는 쉽게 ‘자극적 소비’로 오해받고, 반대로 철저히 피해아동을 익명 처리할 경우 ‘실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불편함은 추상적인 윤리 논쟁이 아닌 법적 분쟁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이를 목격할 수 있는 보도가 바로 ‘정인이 사건(양친 입양아동 학대 사건)’으로 알려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다. 2021년 1월 2일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편과, 1월 23일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이 방영되었다. 제작진은 피해아동의 입양 전 이름과 생년월일, 입양 전후의 얼굴 사진과 영상까지 공개했고, 특히 얼굴을 모자이크 등의 별다른 편집 없이 노출하여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제작진은 얼굴 공개에 대해 “학대의 흔적이 얼굴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를 가린 채로는 피해의 실체를 전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보도는 공분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법적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 되었다.

방송 얼마 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양친 입양아동 학대 사건에 대하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방송을 통해 피해아동의 얼굴과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피해아동이나 신고자 등의 신원과 사진을 언론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규정¹⁾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이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에 대하여 이미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실명·얼굴 등 식별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이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이 제기되었는데, 피해아동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제한이기에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²⁾

경찰은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건 보도에 대하여 2022년 5월 2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사건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다. 검찰 역시 2022년 9월 23일, 한 차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발인의 항고로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을 하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결국 2023년 6월 23일, 검사는 범죄 성립은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자는 2023년 9월 20일, 이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현재는 2025년 12월 18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의 주요 취지는 이러하다. 피해아동이 사망했다라도 이 보도금지 조항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방송은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럼에도 현재는 방송이 이루어진 구체적 맥락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결정은 얼굴 공개의 ‘허용’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얼굴 공개가 정당화되기까지 요구되는 조건이 얼마나 엄격한지 결정문에 담은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사건에서 예외를 가능하게 한 구체적 사정은 무엇이었는가.

2. 아동학대 보도금지 규범과 그에 따른 긴장

‘피해아동의 얼굴 공개’를 둘러싼 논쟁은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건에서만 도드라진 문제는 아니었다. 구미 3세 여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비롯해,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1)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①-② (생략)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9년 한 방송사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초등학생 제자들을 폭행·욕설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피해아동 증언은 모자이크 처리한 채 A씨의 실명·얼굴·경력·사건 발생지를 공개하였다. A씨는 해당 보도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이라며 방송사 기자와 대표를 고소했고, 검찰은 약식기소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2헌가4 결정).

발생할 때마다 피해아동의 얼굴과 이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왔다.³⁾ 사건의 구조적 원인이거나 제도적 실패를 점검하기보다 ‘충격’, ‘반전’ 등 자극적인 언어로 사건을 소비하고, 피해아동의 얼굴을 통해 공분을 극대화하는 보도 관행이 되풀이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법체계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원 공개가 공익에 기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설계되었다.⁴⁾ 매스미디어를 통한 피해자 신원 공개는 사생활 침해 여부나 공익성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입법적 선택으로 여겨져 왔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이 언론과 출판물 종사자에게 부과하는 비밀엄수 의무는 꽤 높은 수준이다.⁵⁾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등은 아동보호사건과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고발인·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없다. 보도의 대상이 피해아동 본인인지, 가해자인지, 신고인인지와 무관하게, ‘사건과 관련되어 특정될 수 있는 정보’ 전반이 포괄된다. 사진은 물론이고, 이름·나이·직업·용모와 같이 개별 정보만으로는 특정이 어렵더라도 결합될 경우 특정 가능성이 있는 정보 역시 금지의 대상에 포함된다.⁶⁾

이와 같은 엄격한 의무는 아동학대 보도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사생활 노출과 2차 피해가 반복되어 온 현실을 고려한 입법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또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낙인과 고정된 이미지가 장기적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⁷⁾ 2021년 발의된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안」은, 언론이 피해아동 등의 신상정보나 사진을 공개할 경우 부과되는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러 하였다.⁸⁾

대법원 역시 범죄 보도가 공익적일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특정 가능 정보 공개까지 동일한 공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이러한 인식 위에서 ‘아동 보호’라는 공익을

3) 송지혜, (2021. 4. 6). 무엇보다 바꾸지 못한 피해 아동 신원 공개 - 구미 아동학대 보도에서 공익과 인권은 설 자리를 잃었다. 시사IN, 제707호.

4) 박경규, (2021). 아동학대 피해자 신원 공개 규정엔?, 관훈저널, 159, 48-56.

5) 김민정, (2021). 아동학대 보도와 피해자 신원공개 기준, 관훈저널, 158, 52-58.;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6) 미국에서도 피해자 신원 보호의 필요성은 정책 보고서를 통해 강조되어 왔다. 미국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국이 1998년 발간한 〈New Directions from the Field〉는 성폭력 및 아동 피해자 보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식별정보 공개를 자제하고, 취약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보도윤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Office for Victims of Crime, (1998), New Directions from the Field: Victims' rights and services for the 21st century, U.S. Department of Justice.).

7)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미국 신문 보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아동 피해자의 식별 가능 정보가 기사에 포함된 사례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보도가 피해자의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Jones, L. M., Finkelhor, D., & Beckwith, J. (2010). Protecting victims' identities in press coverage of child victimization, *Journalism*, 11(3), 347-367. 참조

8)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310, (2021. 4. 5.)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 규범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보도 실무를 규율하는 다양한 기준도 비슷한 방향으로 축적되어 왔다.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 관해 정리된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 유니세프의 미디어 가이드라인 역시 공통적으로 피해아동의 신원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⁹⁾ 언론중재 위원회는 2021년 11월 24일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아동·청소년 보호 조항과 별개로 '아동학대사건 보도(제6조의2)¹⁰⁾ 조항을 신설하였다. 아동학대 사건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학대행위자·고소인·고발인·신고인의 초상·성명·주소·나이·직업 등 특정 가능한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학대행위나 피해상태의 과도한 상세 묘사 및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보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 금지에 대하여 '위축 효과(chilling effect)'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도 피해아동 식별 가능성을 이유로 핵심 장면을 보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익적 보도가 위축된다며, 일정한 요건 하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공개를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¹¹⁾ 이는 보도금지 규정의 보호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여전히 입법적 논쟁의 대상임을 보여준다.

3.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직접적으로 문제된 사건이 아니다.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의 '피해아동'에 관한 보도금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적용된다고 본다면 이 사건 방송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검사가 위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채 기소 유예 처분을 한 것이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

9) 보건복지부·한국기자협회·아동권리보장원, (2022), 아동학대 사건 보도 권고 기준; 한국기자협회, (2009), 인권보도준칙; UNICEF, Guidelines for journalists reporting on children.

10) 제6조의2(아동학대사건 보도) ①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 학대행위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초상, 성명, 주소, 나이, 직업, 그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언론은 아동학대행위나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을 자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40, (2025, 12, 26.)

지가 사건의 쟁점이었다.

나. 결정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먼저, 피해아동이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도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생존 여부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방송이 피해아동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방송매체를 통하여 공개한 이상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여부는 사안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유사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원용하여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아동의 얼굴 등 실제 영상·사진 노출이라는 행위태양, 방송의 목적과 맥락, 대체수단의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지점에서 현재는 이 보도에 대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성립 여부¹²⁾를 공들여 실시했다. 먼저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방송은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지속적 학대 정황과 관련 기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가해자 책임의 실현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적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방송 시점 또한 가해자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고, 수사·기소의 적정성에 관한 공적 관심이 집중된 시기였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과 관련하여, 현재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해아동 얼굴의 실제 영상과 사진 노출이 단순한 자극적 제시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해자 측 해명의 진위를 검증하고 지속적 학대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핵심 자료로 기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멍의 양상, 피부색 변화, 표정 변화 등은 모자이크 처리나 재연 영상만으로는 동일한 수준의 전달이 곤란하고, 전문가 검증 역시 실물 자료를 전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법익 균형성과 관련하여, 현재는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건강한 성장 도모’라는 입법 목적은 더 이상 관철될 수 없다고 보면서도, 그렇다고 하여 보호법익이 전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사망한 경우에도 피해아동의 사적 영역이 무분별하게 폭로되거나 왜곡되고, 끔찍한 피해 장면으로 박제되며,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편견이 확대 재생산될 위험을 방

12) 대법원은 정당행위 판단과 관련하여 행위의 목적·수단·법익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이 결정은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정당행위(「형법」 제20조)를 제대로 심사했는지’를 본 것이기에, 대법원 기준으로 심사가 필요했다.



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편집 방식, 자료의 취득 경위, 방송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침해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실현,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이 사건 방송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고, 검사가 이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채 기소유에 처분을 한 것은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대상 결정에 대한 평가

이 결정의 실질적 함의는 ‘공익이면 보도가 허용된다’는 일반론의 확인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당행위 여부는 목적·수단·법익형량에 대한 구체적 심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데 있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아동의 경우에도, ‘사망’이라는 사정은 적용배제 사유가 아니라 법익형량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도 밝혔다. 즉 ‘건강한 성장 도모’라는 보호목적은 관철될 수 없게 되었으나, 사망한 피해아동에 대해서도 인격적 이익 및 2차 피해 방지라는 보호법익은 여전히 존속하며, 그 침해 위험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공익적 보도의 보호이익과 형량하여야 한다는 판단 틀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유사 사안에서 '사망했으니 공개 가능하다'는 단순화된 논리를 차단하면서도, 사건의 목적과 수단, 편집 방식, 대체수단의 가능성, 침해 위협의 현실성 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결정은 정당행위 판단 기준을 사후적 종합 평가의 틀로 제시함으로써, 실무상 예측가능성 문제를 여전히 남긴다. 언론의 입장에서는 제작 단계에서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과 대체수단 검토, 편집상 최소침해 조치를 갖추어야 정당행위 심사에서 설득 가능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어떠한 범위까지 사실조사를 수행해야 '수사미진'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번 결정은 '원칙은 금지, 예외는 엄격한 사후 형량'이라는 틀을 재확인하였으나, 그 예외의 작동 조건을 사전적으로 구조화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함께 가진다.

4. 결어

현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의 규범구조를 전제로 하면서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그 성립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보도에서 반복되어 온 긴장을 그대로 드러낸다. 여성·아동 대상 폭력 사건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인적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사건의 맥락과 무관한 사적 영역까지 확산되면서 사회적 낙인과 심리적 고통이 증폭되는 2차 피해의 위험은 이미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¹³⁾ 특히 언론의 속보경쟁과 선정적 보도 관행이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반복적으로 소비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직접적 피해 이후에도 추가적 사회적 불이익과 고통이 발생한다는 판단은 보도금지 규정이 전제하고 있는 보호법익을 잘 설명해준다.¹⁴⁾ 아울러 이번 결정은 학대 피해 아동의 얼굴 공개의 허용 여부를 판단했다기보다, 그러한 공개가 왜 불가피했는지, 대체수단은 없었는지, 보호법익 침해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는지를 엄격히 따져 묻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평가는 언제나 예측가능성의 한계를 남긴다. 언론보도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회복은 쉽지 않고,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사후적 구제 역시 충분히 실효적이지 않다.¹⁵⁾ 이번 현재의 판단도 사후적 평가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13) 법무부, (2014), 여성·아동 폭력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연구, p. 85.

14) 법무부, (2014), 여성·아동 폭력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연구, p. 88.

15) 법무부, (2014), 여성·아동 폭력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연구, pp. 1-3, p. 149.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피해아동 사망이라는 사정을 법률 적용 배제의 근거로 단순화하지도 않고, 보호법익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그 무게와 침해 위협의 현실성을 구체적으로 형량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결정은 얼굴 공개의 허용 범위를 확장한 판례라기보다, 예외 판단의 심사 틀을 보다 정교하게 제시한 판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

조정사례를 통해 살펴본 조정기법

정희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3중재부장

1. 들어가며

춘추전국시대의 전략가인 손자(孫子)는 『손자병법』에서 “병법의 백미는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데 있다”고 말했다. 조정의 가치를 이보다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이다. 당사자가 양측 모두 패하는 소송이라는 전장(戰場)에 나가는 대신, 조정성립이라는 승리를 함께 거두도록 돕는 것이 중재위원의 몫이다.

특히 언론보도는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파되어, 인격권에 돌이킬 수 없이 중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때늦은 구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피해의 확산을 막고 최대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언론조정은 가장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로 가는 길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니다. 백(百)가지 조정 사건은 백(百)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고, 천(千)가지의 이유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조정절차에 임한 당사자들은 누구보다도 분쟁이 이 자리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한편 신청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 같아 화가 나고, 피신청인은 나름의 사정이 있는데 나쁜 사람으로 몰린 것 같아 억울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눈앞에 놓인 난관을 극복하고 합의로 이끌기 위해 때로는 중재위원 각자의 노련한 경험, 화려한 언변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설득기법이다. 누구나 터득하여 활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간과하여 지나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설득의 기법이며, 바로 이것

이 효과적인 설득기법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언론조정·중재현장에서 필요한 설득의 전략과 조정기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대략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부장으로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조정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합의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2. 중재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1)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믿음

설득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설득력이 주어진다.

조정절차에서 중재위원이 당사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뢰는 중재위원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며 이 사건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중재위원은 심리에 임하기 전에 조정신청서, 답변서 등을 통해 당사자의 주장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사건과 관련 있는 판례, 법률규정, 연구결과, 데이터 등을 면밀하게 연구하여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근거와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은 중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내린 결론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전문성과 권위를 부여받기 어렵다.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특히 중요하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란 계량하기도 힘들고 명확한 기준도 부족하므로 선불리 액수를 제시하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가 결정했던 선례, 최근의 동향, 해외의 사례 등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득에 있어서 사례와 통계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그 결과 두 개의 동일한 주장에 있어 하나는 사례를, 다른 하나는 통계를 설득의 근거로 제시했을 때 사례가 통계 수치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할 만하다.

2)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지지할 경우, 상대방은 그

의 공신력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의사들이 의료수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노동조합 관계자가 노동조합 활동이 물가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할 때, 같은 말이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비해 신뢰를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심리를 조정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부는 다양한 경험과 직책을 가진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차피 당사자에게 해야 하는 말이라면, 중재위원 중에서 직업이나 경력, 신념에 비추어 사안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질 가능성이 큰 사람이 예상외로 사안에 대해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면 당사자에게 주는 말의 힘이 달라질 수 있다. 중재위원들 간에 팀워크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3)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진행

당사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한 진행도 중요하다. 중재위원이 사전에 제출된 서류를 보고 이미 형성된 편견을 가지고 조정을 진행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 갈등의 당사자는 혹시라도 중재위원이 상대방에게 좀 더 치우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의심하기 마련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수롭지 않게 중재위원이 던진 한마디로 당사자의 신뢰를 완전히 잃을 수 있다. 서류는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한쪽에 치우친 듯한 말과 태도를 주의하면 좋겠다.

3. 부드러운 분위기 조성 및 경청

1) YES로 답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한다

사람은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 “네”라는 대답을 연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질문한 상대방이 내게 긍정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반대로 계속해서 “아니오”라는 대답을 하게 되면 질문하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고 하니, 심리 초반에 “YES”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찾아오느시느라 힘이 드셨지요?” 혹은 “서면 작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등 “YES”로 답할 수 있는 가벼운 질문을 던지면 조정이 원만하고 부드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2) 마음을 여는 열쇠 “경청”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 당사자들이 억울하다고 분한

감정을 격하게 쏟아놓을 때, 듣기 힘들더라도 일단 경청을 통해 당사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시켜야 당사자를 안정시키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듣는 도중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정말이요?”, “그렇군요” 등의 공감하는 언어를 표현하는 것도 경청의 증거가 되며, 이 증거들이 합의를 이끄는 데 중요한 원천이 된다.

상대방에게 적절하고도 진심어린 공감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심리에 임하기 전에 조정신청서, 답변서 등을 통해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를 세심히 파악해야 당사자로 하여금 내가 당신의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당사자의 말을 듣는 도중에 당사자를 비판하거나 당사자가 말한 내용을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에 대한 가장 큰 실수이며, 기껏 열려가던 마음을 다시 걸어 잠그는 원인이 된다.

3) “맞아요, 그런데…”

당사자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생각되거나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신이 틀렸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더라도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중요성은 인정해야 대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말을 부정하기보다는 “맞아요, 그런데…”라는 화법으로 당사자의 감정은 일단 인정해 주고, 자신의 요구나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맞아요”라는 말을 들은 당사자는 중재위원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게 되고, 이때 “그런데…”라는 말로 중재위원의 의견이나 주장을 추가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사적인 감정 때문에 보도하기보다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 실현을 위해 보도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언론사의 잘못을 무조건 비난부터 하지 말고 이 보도가 공익적 가치가 있음은 인정하되, 다만 균형 잡힌 여론형성이 필요하다는 점 또는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4. 합리적인 조정안의 마련

1)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도 중요하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분쟁이 생기면 이 분쟁의 승자와 패자가 나눌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은 내가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둘 중 하나이며 상대가 가져가는 몫이 크면 내가 가져가는 몫이 작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며 상대를 굴복시키고 내 입장을 고수하여 승리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언론분쟁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정정보도, 손해배상과 같은 가치 외에 체면, 감정적 위로, 원만한 관계, 평판 등의 측정하기 어려운 가치도 있다. 또 그 가치 중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는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따라서 입장 뒤에 숨겨져 있는 저마다의 진심과 이해 관계를 파악하여 합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막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얘기를 나눠보면 금전 배상에 진심인 경우는 예외적이고, 내심에는 기사의 신속한 삭제, 또는 사과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배상의 액수를 가지고 실랑이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후속보도, 서면으로 유감표명, 기사의 삭제 등으로 합의하는 경우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당사자의 내심을 파악하는 것이 늘 쉽지는 않다. 대체로 당사자는 자신의 패를 보이면 불리해진다는 생각에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바를 터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보다는 자유롭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보도에서 특히 불편하게 느낀 것은 어느 부분일까요” 또는 “서로 수용 가능한 지점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등의 ‘열린 질문’을 하면 당사자의 내심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어 좀 더 다양한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2) 체면과 명분을 세워주자

때로 당사자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 특히 조정에 출석한 피신청인은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자신에게 권한을 위임한 회사, 나아가 언론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향후 집단에서 받을 비난이나 부담이 우려되어 합의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이때 중재위원들이 소속 집단에서 받을 비판과 부담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합의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보도가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만은 할 수 없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는 언론사도 있다. 대화를 좀 더 깊이 해보면 보도의 오류를 인정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확인 결과”,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문구에 예민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통상적인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그 취지를 존중해 보도합니다”, “법리를 확인한 결과” 등으로 문구를 바꾸면 합의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끔은 언론사가 반론보도조차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론보도란 보도가 진실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 따라 인정된 권리라는 점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도 있다.

3) 합의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합의로 가는 길을 보다 쉽게, 빨리 가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천천히 견도록 당사자를 유도해야 한다. 일괄합의가 불가능해 보인다면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이 유익한데, 단계별로 접근하면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점차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 간다. 그렇게 부분적인 합의가 쌓이다 보면 애초에 의도했던 일괄합의에 이를 수 있다.

필자가 속해있던 중재부의 경우 조정초안 작성 시, 정정·반론보도문을 풍부하고 길게 기재하였다가 신청인이 원하는 핵심 내용만을 축약하고 정정·반론보도문의 길이를 줄여가면서

단계적으로 합의할 때 조정성립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가급적 1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다양한 조정안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된다. 복수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선택하게 한다면,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부여하게 되어 만족감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심리 전에 사건의 쟁점을 잘 살피고 사실 관계를 정리한 후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여 다양한 조정안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5. 조정 불성립의 불리한 점 알려주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해에 훨씬 민감하다. 그래서 “당신이 ~를 하면 이익을 본다”는 메시지보다 “당신이 ~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다. 또한 당사자는 조정에 이를 만큼의 갈등 상황을 자주 겪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자신이 얻을 것과 잃을 것을 계량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순간적인 억울함과 보복심리에 휘말려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당사자에게 조정절차의 신속성, 경제성, 합리성, 유연성 등을 강조하고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의 소모에 비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결론을 얻게 되므로 이왕 시작한 조정절차에서 분쟁을 마무리 짓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소송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 만약 인용되더라도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크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신속한 대안(기사 열람차단, 정정보도, 반론보도, 후속보도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조정절차에 참여한 대리인에게 결정권이 없어, 대리인은 조정에 동의하나 위임인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합의안에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겠다.

6. 당사자 간의 말다툼 방지

1) 논쟁은 설득을 싸움으로 이끈다

조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논쟁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논쟁으로 접어들면 설득과 타협은 온데간데 없고 조정은 공격과 방어, 진압의 과정으로 바뀌게 된다.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정시작 단계에서 조정진행의 규칙을 설명하면 좋다. 교대로 말

하기,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말하기, 당사자의 말을 비꼬거나 공격하지 않기,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기 등의 규칙을 정하고 사전에 고지하면 당사자들의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는 신뢰도 줄 수 있다.

2) 논쟁에 휘말리지 말자

가장 나쁜 것은 당사자의 공격에 조정위원이 휘말려 조정을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미국의 시나리오 작가 피터 로렌스(Peter Lawrence)는 “화가 날 때 말을 하라, 그것은 언젠가 후회할 최고의 응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논쟁에 휘말리는 순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문제는 더욱 악화된 채 그대로 남게 된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이 있으니, 중재위원은 말을 참고 기다릴 때와 말을 해야 할 때를 현명하게 구분하면 좋다.

7. 맺는말

조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늘 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원만하게 합의되기를 원하지만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실타래처럼 얽혀 도저히 합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건의 당사자들도 어떻게든 분쟁을 지금 이 조정절차에서 끝내고자 하는 진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의 마음을 읽어 합의로 이끌어가는 힘은 중재위원과 조사관의 분쟁해결 의지이다. 중재위원과 조사관이 당사자들과 함께 문제의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조정안에 대한 진심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 모두가 이제는 조정성립이 안 되겠다고 느끼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근과 끈기, 그리고 당사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고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재위원의 몫이고 그것이 바로 조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본질에 부합할 것이다. 🍵

딥보이스와 선거 : AI 음성 합성 기술이 민주주의에 던지는 질문

오세욱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1. 들어가며: ‘딥페이크’보다 우려되는 ‘딥보이스’

지난 2018년 4월 미국의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BuzzFeed)가 유튜브에 게재한 한 영상¹⁾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해당 영상 내용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에게 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영상 속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머저리(dipshit)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버즈피드가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 경

1) BuzzFeedVideo, (2018, 4, 17), You Won't Believe What Obama Says In This Video! [Video],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cQ54GDm1eL0>



고하기 위해 영화감독 조던 필(Jordan Peele)과 함께 만든 조작 영상이었다. 이 영상은 교묘하게 조작돼 일반인들이 봤을 때 조작 여부의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버즈피드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의 바탕이 되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인 딥러닝(deep learning)을 사용해 원본 이미지나 동영상 위에 다른 이미지를 중첩(superimpose)하거나 결합(combine)해서 원본과는 다른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어 주는 이미지 및 동영상 조작(manipulation) 기술을 말한다.²⁾ 딥페이크는 사람의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최적의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기계학습이 적용돼 식별이 굉장히 어려운 허위정보 생성 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며,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실재와는 동떨어진 것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은 기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비교적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선거 국면에서 딥페이크가 실제로 활용된 사례들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의 외형과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한 ‘AI 윤석열’³⁾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에는 후보자가 직접 허락한 ‘공식 캠페인 도구’로서 긍정적인 기술 활용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으나, 동시에 “만약 반대 진영에서 악의적인 내용을 담아 유포했다면 어떻게 대응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남겼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2023년 말, 우리나라 국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선거 조작의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⁴⁾을 신설하였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신설 조항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음향’이다. 법 조문에 명시된 ‘음향’이라는

2) 최순욱·오세욱·이소은, (2019), 딥페이크의 이미지 조작: 심층적 자동화에 따른 사실의 위기와 폰크툼의 생성, 미디어, 젠더 & 문화, 34(3), 339-380.

3) 국민의힘TV, (2022, 1, 13), [AI 윤석열] 더 나은 변화? ㅇ? [동영상],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c9HGMqUvUJA>

4)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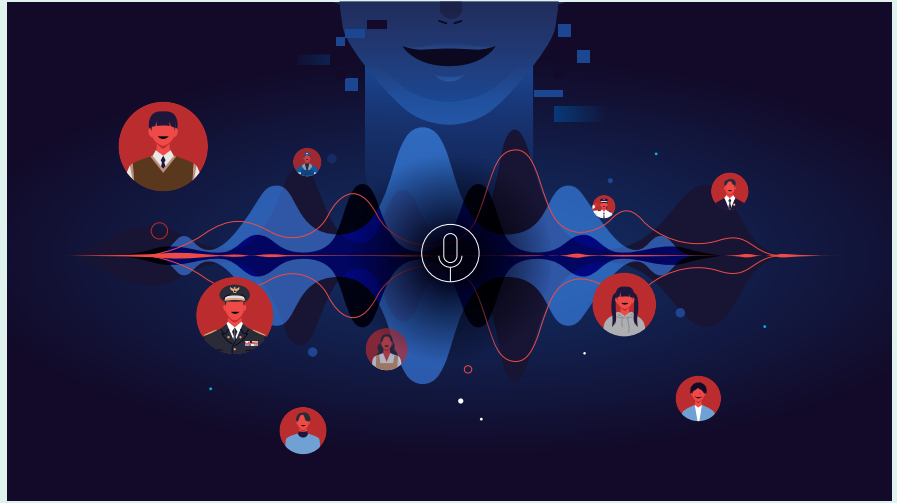
규제 대상은, 그동안 ‘영상’ 조작에 쏠린 관심으로 인해 비교적 덜 주목받았다. 언론과 규제 당국이 딥페이크 영상의 시각적 부자연스러움을 식별하는 데 집중하는 사이,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 즉 ‘딥보이스(Deep Voice)’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축으로 조용히 성장해 왔다.⁵⁾ 딥보이스가 딥페이크 영상보다 선거 국면에서 오히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 기술적 단순함에 있다. 영상 조작물은 고도의 그래픽 처리와 방대한 연산 자원을 필요로 하며, 시각 데이터의 특성상 기술적 결함이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딥보이스는 수 초 분량의 음성 샘플만으로도 특정 인물의 음색, 억양, 호흡 패턴을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기술적 진입장벽은 악의적 의도를 가진 개인이나 조직이 조작 음성을 대량으로 생산·유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선거가 진행될 때 ‘음성’이 갖는 의미는 시각 정보와는 또 다르다. 지난 우리나라의 선거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선거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들은 정교하게 편집된 영상보다 녹취록이나 통화 내용 공개와 같은 음성 기반 정보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공식 연설보다 사적 맥락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음성 자료에 더 높은 진정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딥보이스 기술이 유권자의 확증 편향을 자극하고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된다.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현시점에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지방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지역 기반의 폐쇄적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가 유통되는 특성이 있어, 공적 감시망이 미치지 못하는 경로로 조작 음성이 확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2. 딥보이스 기술의 현황과 선거에서의 위험성

인공지능 기반 음성 합성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있다. 초기 TTS(Text-to-Speech) 기술이 기계적 낭독 수준에 머물렀다면, 최근의 생성형 AI 모델은 특정 인물의 음색, 억양, 호흡 패턴까지 정밀하게 재현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팀이 개발한 ‘VALL-E’는 기존 학습 과정에서 접하지 못한 발화자의 3초 분량 녹음만으로도 고품질의 개인

⁵⁾ Chesney, R., & Citron, D. K. (2019). Deep fakes: A looming challenge for privacy, democracy, and national security. *California Law Review*, 107(6), 1753–1820.



화된 음성을 합성해낼 수 있다.⁶⁾ ‘GLM-TTS’⁷⁾와 같은 오픈소스 모델은 3~10초의 참조 음성만으로 파인튜닝(Fine-tuning) 없이 임의의 음성을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원래 음악 창작을 위해 개발된 ‘SVC(So-VITS-SVC)’⁸⁾ 기술 역시 특정인의 음성 데이터를 학습시킨 뒤 제3자의 발화에 해당 음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작동하면서도 원본의 음높이와 억양을 보존한다. 이 역시 오픈소스 모델로 개발되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들은 감정이 섞인 떨림이나 격앙된 어조까지 구현할 수 있어, 단순한 텍스트 낭독과는 질적으로 구별된다. 과거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가능했던 음성 위조가 이제는 개인용 PC 한 대와 공개된 유튜브 영상 속 후보자의 짧은 발언만으로도 실행 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다.

딥보이스가 딥페이크 영상보다 더 큰 위험성을 지니는 또 다른 이유는 유통 경로의 은밀성과 탐지의 기술적 난이도에 있다. 영상 조작물의 경우 시각적 부자연스러움을 포착하기 위한 탐지 도구가 비교적 활발히 개발되어 왔다.⁹⁾ 반면 딥보이스 탐지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기술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노스웨스턴대학교의 ‘노스웨스턴 보안 및 AI 연구소(Northwestern Security & AI Lab)’ 소장인 서

6) Wang, C, et al. (2023). Neural codec language models are zero-shot text to speech synthesizers (arXiv:2301.02111), arXiv, <https://doi.org/10.48550/arXiv.2301.02111>

7) <https://github.com/zai-org/GLM-TTS>

8) <https://github.com/svc-develop-team/so-vits-svc>

9) SOCRadar. (2025, October 21). Top 10 AI deepfake detection tools to combat digital deception in 2025. <https://socradar.io/blog/top-10-ai-deepfake-detection-tools-2025/>

브라마니안(V.S. Subrahmanian) 교수는 독자적인 AI 음성 탐지 실험을 수행했다. 서브라마니안 교수의 연구팀은 시중에서 판매되거나 무료로 공개된 14종의 오디오 딥페이크 탐지 도구를 검증했다. 그는 테스트 결과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discouraging)이었다고 밝혔다. 서브라마니안 교수는 “현재로서는 오디오 딥페이크 탐지기를 신뢰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을 권장할 만한 도구도 없다”고 포인터(Poynter)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¹⁰⁾

음성 데이터는 영상에 비해 파일 용량이 작고 압축률이 높아 유통이 용이하다는 구조적 특성도 갖는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은 다층적 선거 국면에서는 공식 캠페인 채널보다 폐쇄형 SNS나 숏폼 플랫폼을 통한 유포가 주된 경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1분 내외의 짧은 콘텐츠는 정보의 맥락보다 강렬한 한 마디에 수용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이러한 환경에서 후보자의 목소리로 생성된 짧은 발언은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산될 수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유통 경로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폐쇄형 메신저이다. 지인 간 공유를 통해 전달되는 파일 형태의 ‘녹취록’은 공식 언론 보도와는 다른 차원의 사적 신뢰를 기반으로 유통된다. 이러한 음성 파일은 검색 엔진의 수집 대상이 아니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미치기 어려운 영역이다. 한 번 유포된 음성은 디지털 공간의 사적 네트워크 속에 잠복하다가, 선거 직전 결정적 시점에 재확산되며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딥보이스가 선거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영향력은, 유권자의 심리적 취약점과 결합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정치적 맥락에서 ‘녹취’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은폐된 진실’이라는 강력한 상징성을 갖는다. 유권자들은 공식 연설보다 사적 공간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음성 자료에 더 높은 진정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확증 편향과 결합할 때 증폭된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가진 유권자에게, 해당 후보의 목소리로 합성된 부정적 내용의 음성은 기존 신념을 확인해 주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려스러운 점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면자 효과(sleeper effect)’¹¹⁾다. ‘수면자 효과’는 신뢰도가 낮은 출처에서 전달된 메시지라

10) Mahadevan, A. (2024, March 21), AI detection tools for audio deepfakes fall short, How to spot them, Poynter Institute.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24/deepfake-detector-tool-artificial-intelligence-how-to-spot/>

11) Hovland, C. I., Lumsdaine, A. A., & Sheffield, F. D. (1949). Experiments on Mass Communic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출처에 대한 기억이 약화되면서 메시지의 설득력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딥보이스의 맥락에 적용하면, 설령 선관위나 언론이 특정 음성이 AI로 합성된 위조물임을 밝히더라도, 이미 해당 음성을 접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한 유권자의 인식에는 부정적 잔상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딥보이스의 위협은 단순한 기술적 조작의 차원을 넘어, 민주적 의사결정의 전제인 합리적 토론과 사실 기반 판단을 구조적으로 침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딥보이스를 딥페이크 영상 못지않은 시급한 위협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점인 정치적 불신의 심리와 폐쇄적·사적 네트워크를 동시에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현행 규제 체계의 한계와 보완 방향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법문상 ‘음향’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조항의 약칭이 ‘딥페이크영상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사실은 입법 과정에서의 관심이 주로 영상 조작물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용기준 역시 ‘딥페이크영상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규제 당국과 현장 단속 인력이 음성 단독 조작물을 영상의 부수적 요소로 취급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음성만을 단독으로 활용한 조작물, 즉 딥보이스는 법이 규정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에 대한 입증에 영상보다 기술적으로 더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공개된 음성 위조 탐지 도구들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음성 조작물의 진위 판별은 영상에 비해 훨씬 모호하다. 이는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음성 조작물이 법적 규제를 실질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시사한다.

해외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AI 음성 조작의 실질적 위협을 경험하고 구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24년 1월 미국 뉴햄프셔주 대통령 프라이머리 직전에 발생한 ‘AI 로보콜(robocall)’ 사건이다. 프라이머리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에게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를 모방한 자동전화가 발송되었다. 이 음성은 바이든 특유의 표현인 “What a bunch of malarkey!(이건 완전히 헛소리야!)”로 시작하며, “여러분의 투표는 이번 화요일이 아니라 11월에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해 민주당 유권자들의 프라이머리 투표를 만류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전화의 발신자 번호는 뉴햄프셔 민주당 전 의



장인 캐슬린 설리번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위장되어 있었으며, 설리번 본인은 이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이든 대선캠프는 대통령이 이 전화를 녹음한 사실이 없음을 즉각 확인했고, 뉴햄프셔주 법무장관실은 이 음성이 인공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장관실은 이 전화가 “뉴햄프셔의 대통령 프라이머리를 방해하고 유권자 투표를 억압하려는 불법적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¹²⁾ 이 사건은 AI 음성 복제 기술이 실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억압의 도구로 활용된 최초의 주요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이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의 AI 로보콜 전면 금지 결정과 관련자에 대한 600만 달러 과징금 부과 및 형사 기소로 이어졌다. 미국은 특정 매체 형태에 국한하지 않고 ‘음성 사칭’ 행위 자체를 직접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유럽연합(EU)의 「AI 규제법(AI Act)」은 위험도에 따른 차등 규제를 적용하며, 정치적 목적의 AI 생성물에 대해 투명성 의무와 출처 표시를 강제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¹³⁾ 한국의 「공직선거법」이 ‘금지 기간’ 설정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다면, 유럽연합의 「AI 규제법」은 생성물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의 규제’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법제의 보완 방향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¹²⁾ Sherman, A. (2024, January 22). Fake Joe Biden robocall in New Hampshire tells Democrats not to vote in the primary election, PolitiFact, <https://www.politifact.com/factchecks/2024/jan/22/robocaller/fake-joe-biden-robocall-in-new-hampshire-tells-dem/>

¹³⁾ European Parliament. (2024). Regulation (EU) 2024/1689 (AI Act).

우리나라 현행 심의 체계에는 AI 기술이 결합된 음성 조작물에 특화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언론이 제보받은 음성 파일을 보도할 때 준수해야 할 기술적 검증 절차가 부재한 상황에서 속보 경쟁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조작 음성이 검증 없이 기정사실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플랫폼 차원의 대응 역시 충분하지 않다.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 규제에 나서고는 있지만, 국내 선거에서 실질적 유통 경로가 되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폐쇄형 메신저에서의 음성 파일 유포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 국내 포털 역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는 필터링 기술을 강화하고 있으나, 단순 음성 파일 공유에 대해서는 실시간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속이는 기술의 발전 속도는 그것을 적발하는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항상 빠르다. 완벽한 방안은 없겠지만,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서 보완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첫째, 언론의 음성 보도 원칙이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익명으로 제보된 후보자 음성 파일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의 기술적 검증 결과를 보도에 병기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면피성 문구는 앞서 언급한 수면자 효과를 차단할 수 없다.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보도를 유예하거나 조작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 경고를 삽입하는 구체적 절차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기술적 표준화가 법적 규제와 병행될 필요가 있다. ‘C2PA(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¹⁴⁾ 표준은 콘텐츠 제작자가 디지털 자산에 출처 정보를 암호화 서명된 메타데이터 형태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워터마크와 결합하여 메타데이터가 제거되더라도 자산과 출처 정보 사이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¹⁵⁾ 이러한 글로벌 표준을 참고하여, 선거운동용으로 제작되는 AI 음성 콘텐츠에 기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오디오 워터마크 삽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후 탐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출처 정보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조작 주체의 추적 가능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유포를 억제하는 예방적 접근이 될 수 있다.

셋째, 유권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와 비판적 수용 태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적 규제와 기술적 방어선이 아무리 정교해지더라도, ‘속이는 기술’의

14) <https://c2pa.org/>

15) 오세욱, (2025), ‘그럴 듯한 가짜’ 속 ‘진짜’를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 ‘C2PA’, KPF 미디어브리프, 2025년 4호.

진화 속도를 완벽히 앞지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결국 허위 정보의 최종 도달점인 유권자 스스로 ‘방화벽’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자극적인 폭로성 음성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일치하여 즉각적인 감정적 동요를 일으킬수록 더욱 냉정하게 출처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특히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과 같은 폐쇄형 메신저를 통해 공유되는 ‘출처 불분명한 녹취 파일’은 딥보이스 조작의 주된 타깃이 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귀는 열어두되, 무조건 믿지는 말아야

지금까지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 즉 딥보이스가 선거 과정에서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살펴봤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우리 사회의 규제 역량과 대중의 경계심이 ‘눈에 보이는’ 위협에 편중되어 있는 사이 ‘귀로 파고 드는’ 위협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이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딥보이스의 위협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최신 음성 합성 기술은 3초 내외의 샘플만으로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정밀하게 복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 기술들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유통 구조의 측면에서 음성 파일은 영상에 비해 용량이 작고 폐쇄형 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확산되며, 현존하는 탐지 기술로는 그 진위를 신뢰성 있게 판별하기 어렵다. 심리적 측면에서 ‘녹취’가 갖는 고유한 상징성은 유권자의 확증 편향을 자극하고, 수면자 효과를 통해 사후 정정의 실효성마저 약화시킨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딥보이스는 딥페이크 영상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며, 어쩌면 선거 국면에서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2024년 미국 뉴햄프셔주 AI 로보콜 사건은 이러한 위협이 이론적 가능성이 아닌 현실임을 입증한 주요 사례다. 단돈 150달러의 제작비로 현직 대통령의 음성을 복제하여 수천 명의 유권자에게 투표 포기를 종용한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데 정교한 기술도 막대한 자본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불편한 사실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음향’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그러나 ‘딥페이크영상 등’이라는 약칭에서 드러나듯 규제의 실질적 무게중심은 여전히 영상에 쏠려 있으며, 음성 단독 조작물에 대한 탐지·입증·단속의 구체적 체계는 미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026년 6·3 지방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고 정보 유통이 지역 기반의 폐쇄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언론 보도 원칙의 재설계, C2PA 등 기술적 표준의 도입, 유권자 디지털 리터러시의 강화라는 세 가지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해법이 될 수 없다. 속이는 기술의 진화 속도는 언제나 그것을 적발하는 기술보다 한발 앞서기 마련이며, 법과 제도는 태생적으로 기술 변화를 뒤쫓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 세 가지 접근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허위 정보의 최종 도달점인 유권자 스스로가 마지막 방화벽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다.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정보 환경이 기술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작동 조건 자체에 대한 질문이다. 🇺🇸

서는 자리가 바뀌자 보인 것들 : 15년의 취재수첩과 3년의 중재노트 사이에서

정혜진 변호사, 전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중재위원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이런저런 위원회에 많이 참여해 봤지만, 필자에게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경기중재부 중재위원으로 활동한 기회가 다른 어떤 위원회 활동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다. 중재위원이라는 직책 자체가 가지는 무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변호사가 되기 전 현직 기자로 15년을 일했기 때문이다.

기자 시절, 언중위는 그리 달가운 곳이 아니었다. 지면에 실린 기사의 내용에 대해 독자가 항의를 해오면 그 자체만으로 피곤한 일인데, 신문사 선에서 해결되지 않고 독자가 언중위에 중재 혹은 조정 신청을 하면 우리는 “(언중위에) 끌려간다”거나 “별을 달았다”는 식으로 자조 섞인 말로 표현하곤 했다. 재미있는 건, 정보보도나 반론보도 결정이 내려지면 마치 기사를 잘못 쓴 것 같은 패배감에 속상해하면서도 언중위에 자주 ‘끌려가는’ 기자들이 유능한 기자라는 묘한 인식도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큰 기사를 쓴다는 방증으로 통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아쉽게도(?) 필자는 기자 시절 한 번도 위원회에 ‘끌려간’ 적이 없다. 매번 정정이나 반론이 필요 없는 완벽한 기사를 썼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싶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주로 기획기사 부서에서 일해 마감 시간 직전까지 분초를 다투며 작성해야 하는 그런 기사를 쓸 기회가

별로 없었기도 하고, 운이 좋아 매번 좋은 데스크들을 만나 문제 될만한 부분은 미리 보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신 동기들이 언중위에 다녀온 날이면 함께 술을 마시며 중재위원들과 신청인을 성토(?)하곤 했다. 그렇게 특별한 '전과' 없이 기자 생활을 마감한 내가 신문을 떠났고 12년 만에 변호사 자격으로 중재위원에 위촉되었을 때 감회는 남달랐다.

중재위원이 되어 가장 먼저 깨달은 점은 '서는 자리에 따라 보이는 풍경이 다르다'는 평범한 진리였다. 기자 시절에는 동료가 조정에 회부되면 '신청인이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하며 지레 피신청인의 입장에 서곤 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기자들의 노고를 왜 몰라주나 싶은 서운함도 있었다.

그러나 객관적인 중재위원의 눈으로 마주한 신청인들의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았다. 아직 었된 고등학생이 신청인으로 출석했던 날의 기억이 선명하다.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기사는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갖춘 보도였다. 다만 공익의 이름으로 어디까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 설정이 미흡했다. 취재의 충실함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었지만, 기자가 사용한 몇몇 표현으로 인해 기사에서 익명으로 지칭한 고등학생 선수가 누구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된 게 문제였다. 기사가 의도한 것은 운동부 코치의 비리 폭로였는데, 코치의 비리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된 운동부 학생의 신원이 드러난 것이다. 기자의 시각으로만 보면 그건 기자가 의도한 것이 결코 아니었고, '아마(기사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부차적인 정보였다. 제한된 시간 내에 취재하고 마감해야 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피해 학생의 실명을 쓴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온 고등학생은 조정 과정에서 위촉되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다가 중재위원들이 기자의 부주의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자 그제야 보도로 인한 피해를 직접 진술하며 눈물을 보였다. 자신은 계속 운동을 해야 하고 이 사건의 피해 학생이라는 건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보도로 인해 신원이 알려져 운동부도 잠시 쉬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이 오래 기억에 남은 건 어린 학생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사'라는 이름으로 보도되면 미처 의도치 않았던 피해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기자가 충실하게 취재한 사건에서도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법익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기자에게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걸 그때 충분히 알지 못했다.

앞선 고교 운동부 사건은 중재위원 3년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실로 '아름답게' 해결된 사례였다. 조정 과정에서 우리 중재부는 피신청인 측에, 비록 실명을 쓰지는 않았으나 주변 정보들을 조합하면 해당 학생의 신원이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런 위협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을 지적했다. 다행히 피신청인 측도 열린 마음으로 조정에 임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연과 중재부의 지적을 경청한 뒤, “사건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의욕이 앞서 불필요한 정보까지 담았던 것 같다”며 자신의 글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줄 몰랐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양측이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임한 덕분에 합의는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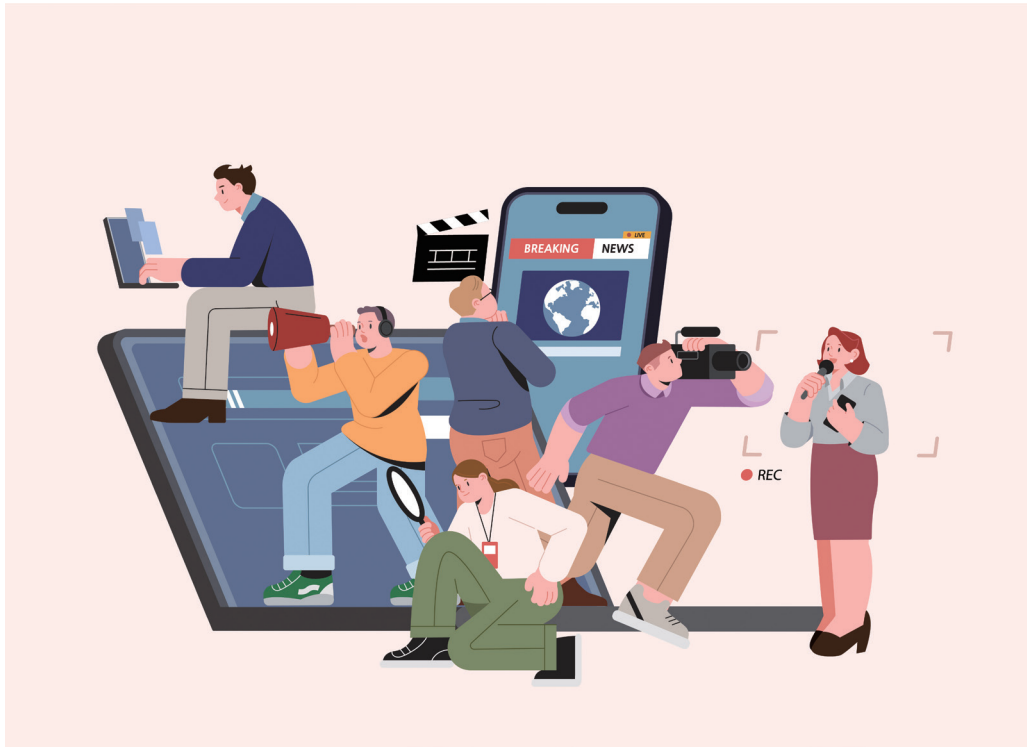
그러나 현실은 늘 이처럼 훈훈하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보도의 수준이 너무 낮아 중재부가 한숨을 내쉬게 되는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1인 인터넷 매체나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보도는 저널리즘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기본적인 요건조차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비문은 예사였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카더라’ 식의 폭로가 넘쳐났다.

필자가 신문사를 떠나던 2000년대 말만 해도 언론은 여전히 ‘게이트키퍼’가 살아있는 조직이었다. 현장을 누비던 기자들의 원고는 부장과 국장의 엄격한 데스크킹을 거치며 정제되었고, 그 과정에서 오보의 위험은 상당 부분 걸러졌다. 반론 의견 게재 역시 꼭 지켜야만 하는 ‘룰’로 인식되었다. 언론사의 수가 제한되어 있던 만큼 최소한의 품격은 어느 언론사든 유지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10여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중재위원으로 마주한 환경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였다. 여전히 언론의 자유와 함께 막중한 책임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언론사도 있지만, 언론사라는 이름표는 달고 있으나 최소한의 문장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게이트키퍼 시스템 자체가 없는 매체들이 차고 넘쳤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제도적 변곡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2015년 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으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취재·편집 인력 5명의 상시 고용과 이를 증명할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다. 위 개정 규정에 대해 인터넷신문사 운영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27일 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마1206 결정).

다수의견은 인터넷신문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거짓·부실 보도를 한 매체는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등록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오히려 법적 규율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해당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결정은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가치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중재 현장에서 체감한 현실은 결정문이 전제한 ‘시장에 의한 자정작용’과는 다소 달랐다. 실제로는 자극적 보도와 SNS 확산 구조를 통해 일정한 독자층을 확보하며 존속하는 인터넷 매체도 적지 않았다. 사실 확인, 반론권 보장과 같은 기본적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은 기사들이



반복적으로 분쟁의 대상이 되었고, 그 피해는 개별 당사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특히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자극적 보도로 조회수를 확보하는 일부 인터넷 매체의 기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적지 않게 드러났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임이 분명하다. 다만 그 자유가 실질적 책임 구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다. 등록 요건을 완화한 선택이 언론 생태계의 다양성을 넓힌 측면이 있다면, 동시에 저널리즘의 최소 기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자율적 논의 또한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중재 위원으로 활동하며 마주한 수많은 사건들은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었다. 누구나 기사를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언론의 문턱은 낮아졌으나 1인 매체 보도의 질적 저하라는 우려는 현실화된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함께 가야 하는데, 과연 현실에서 그 조화가 실현되고 있는지 우려를 지울 수 없었다.

이런 안타까움은 임기 중 1년간 활동했던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도 체감할 수 있었다. 시정권고는 언론보도로 인한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그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로, 수

정이 불가능한 지면 매체에는 주의를 촉구하고, 인터넷 매체에는 비식별 처리나 삭제 등의 조치를 안내한다. 범죄 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여 학습 효과를 유발하거나, 연예인 부부의 이혼 소식에 미성년 자녀의 사진까지 게재하는 등 과도한 사생활 침해 보도의 상당수는 조회 수를 올리고자 하는 인터넷 매체였다.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들은 시정권고 회의에 오면 가장 최근의 연예계 소식과 엽기적인 범죄 방법을 다 섭렵할 수 있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곤 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조정신청의 약 70%, 시정권고의 80% 이상이 인터넷신문 기사였다. 조심스럽지만, 헌법재판소의 2016년 결정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이 저널리즘의 질적 하락이라는 '실리'를 놓치게 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다른 중재위원들과 헌신적인 직원들 덕분에 배운 점도 많았다. 언론인 출신 위원님들은 같은 중재부 위원인 동시에 언론계 선배들이었다. 필자와 달리 평생을 언론인으로 보내신 위원님들이 언론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모습과 언론계 선배로서 까마득한 후배뻘인 피신청인 기자들을 때로는 따끔하게 훈계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달래며 조정에 참여하시는 모습에서 언론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법조계 선배이자 법관 위원인 중재부장님으로부터는 진심으로 경청하는 자세, 양측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안함으로써 조정 가능성을 높여가는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조정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는 양측의 이해대립이 심해 조정이 안 될 것 같은 사건도 중재부장님의 노련한 진행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보면서 감탄하곤 했다. 이러한 기술의 학습은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더불어 중재위원들이 사건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별 특성까지 조합하여 매번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해 준 소장님과 직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원만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셨다.

그 무엇보다 큰 보람은 언중위의 본질적 역할에 있었다. 기자 시절에는 언중위에 '끌려간다'고 표현했지만, 중재위원으로 일하며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충돌할 때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온건하고 문명적인 해결 방식에 나 역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스러웠다. 조정은 누군가의 승패를 가르는 절차가 아니라, 자유와 권리가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임기 내내 배웠다.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인격권과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하는 장치 역시 민주사회의 필수 요소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언중위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방지와 플랫폼의 공적 책임 - 'N번방 방지법' 합헌 결정의 법리적 고찰

정지웅 법률사무소 조 대표변호사

【대상판례】

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1헌마290, 2021헌마152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제1항 등 위헌확인]

1. 들어가며: 디지털 시대의 인격권과 새로운 법적 안전망

2020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N번방 사건'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잔혹하게 훼손할 수 있는지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다. 디지털 성범죄물은 한 번 유포되는 순간 무한 복제와 초고속 전파를 통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실시간으로 침해하는, 전통적 매체와는 질적으로 다른 파괴력을 지닌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입법부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를 제정·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시행 직후부터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성 침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침해, 정보매개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불러왔다. 그리고 2025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1헌마290, 1521(병합) 결정)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은 디지털 플랫폼이 더 이상 '중립적 통로'에 머무를 수 없으며, 디지털 영토의 관리자로서 공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헌법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2.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배경 및 경과

청구인들은 SNS·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개인,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 등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사전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통신 내용을 상시 감시하게 되어 표현의 자유, 통신의 비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특히 정보 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한 국제 인권 기준과의 충돌을 지적하면서, 이 조항을 '인터넷 검열·감시법'이라 비판하였다.

현재는 2025년 10월 23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2항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문제 조항이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 의무와 이에 불응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은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실체

심판대상이 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주요 내용은 시행령 제30조의6 및 관련 고시에 구체화되어 있으며, 크게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신고·삭제 요청 기능 마련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 창구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요청을 처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2. 검색어·제목 연계 필터링 신고·차단된 불법촬영물 등의 제목·주소 정보와 이용자 검색어 등을 대조하여, 동일·유사 정보가 검색 결과로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구한다.
3. 특징값(해시값) 대조에 의한 업로드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불법

촬영물로 확정된 정보의 특징값(일종의 ‘디지털 DNA’)과 이용자가 새로 업로드하려는 정보의 특징값을 기계적으로 대조하여,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불법촬영물이 재게시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한다.

4. 사전 고지 의무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와 아울러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한다.

3. 법리적 쟁점: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의 한계

가. 명확성 원칙과 ‘성적 욕망·수치심’ 개념

청구인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어떤 정보가 규제 대상인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유사한 개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온 점과 기존 판례에서 형성된 해석 기준을 근거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는 해당 개념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을 기준으로, 가해자에게 성적 욕구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인격적 존재인으로서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의미 내용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표현은 다소 광범위하더라도, 기존 형사법 영역에서 형성된 해석들과 결합될 때 규제 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명확성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개념 탄력성을 허용해 온 현재의 종전 입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나.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기술의 가변성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현재는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이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유통 수법의 지능화를 고려하였다.

현재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라는 규율 목적과 대상,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성격과 내용은 이미 법률 조항 자체에서 상당 부분 특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기술

적 조치의 구체적 방식과 표준은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입법부가 고정된 문언으로 사전에 일일이 규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행정부가 전문성과 탄력성을 바탕으로 시행령·고시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은 '규제의 본질적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술의 가변성을 수용하기 위한 합리적 위임으로 평가되었다.

4. 사전검열 금지와 일반적 감시의무 논의

가. 기계적 특징값 대조와 인간적 내용 심사의 구분

이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적 쟁점은, 특징값 대조와 검색 제한 등 기술적 조치가 헌법상 금지된 사전검열이나 정보매개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현재는 먼저 이 조치들이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이용자 개별 콘텐츠의 사전적·선택적 심사를 거쳐야 비로소 게시·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보았다.

특징값(해시값) 대조는 이미 불법촬영물로 확정된 정보의 디지털 지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업로드되는 정보의 지문과 기계적으로 일치 여부를 비교하는 알고리즘 처리에 불과하며, 행정기관이 개별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가치를 평가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검열'과는 구별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필터링은 사업자가 사적 자율에 따라 수행하는 조치로서, 행정기관이 직접 사전 심사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사전검열 부정의 근거가 되었다.

나. 비공개 영역과 공개 영역의 경계 설정

청구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이 결과적으로 1:1 대화나 폐쇄형 채팅방까지 감시·차단 대상으로 삼게 되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와 정부는 이 조치의 적용 범위를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로 해석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검색·열람할 수 있는 공개 공간에서의 불법촬영물 전파를 막는 것이 핵심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 간 비공개 통신 내용이 기계적으로 분석·감시되는 위험은 현행 제도의 구조상 크지 않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 혹은 가입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반폐쇄형 커뮤니티와 같이 공개성과 사적 영역이 교차하는 회색 지대에서는 향후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플랫폼 구조가 계속 진화하는 상황에서, 공개성과 폐쇄성의 법적 기

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5. 과잉금지원칙과 플랫폼의 공적 관리 책임

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현재는 먼저 디지털 성범죄물의 전파가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게 침해하며, 나아가 사회 전반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2차·3차 피해를 양산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수단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현재는,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없을 경우 사후 신고·삭제만으로는 인터넷상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징 값 대조, 검색 제한,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은 불법촬영물의 재유포를 물리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입법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므로,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나. 침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청구인들은 사전조치 의무가 과도한 부담을 부가통신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전가하며, 정상적인 콘텐츠까지 삭제·차단되는 ‘과차단’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현재는, 순수한 사후조치만으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고, 한 번 유포된 불법촬영물이 사실상 ‘영구적 피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정한 사전조치는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았다.

또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와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에게만 부과되고, 이용자에게는 형사처벌의 위협에 관한 사전 고지 정도의 제한만이 가해진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현재는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과 광범위성을 감안할 때, 사업자와 이용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보았다.



6. 국제적 흐름과 디지털 서비스의 책임성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에 대한 이번 합헌 결정은, 플랫폼을 단순한 ‘정보의 통로’가 아닌 디지털 공론장의 관리자로 파악하는 국제적 규제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은 2017년부터 대형 소셜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불만 제기 시스템 구축, 위법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차단, 책임자 지정,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플랫폼의 삭제·차단 책임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후 EU 차원에서 제정된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불법 콘텐츠 신고·처리 절차, 플랫폼의 삭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피해 구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에 대한 위험평가와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 매출액 연동 과징금 등 보다 포괄적인 책임 규범을 마련하였다. 한편 NetzDG가 ‘플랫폼의 자의적 과잉삭제’를 유발했다는 비판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DSA가 내부 이의제기 절차와 이용자 구제 메커니즘을 강화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이번 결정은 한국에서도 플랫폼을 ‘중립적 인프라’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를 예방할 책임을 지는 공적 행위자로 본다는 점을 헌법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법제 역시 단순 삭제·차단 의무를 넘어, 알고리즘 투명성, 위험 평가, 내부 이의제기 절차 등 DSA 수준의 포괄적 책임 구조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7.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과제

가. 인격권 보호의 새로운 기준

이번 합헌 결정은 전통적인 언론·출판 매체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이 사실상 여론 형성과 정보 유통의 중심이 된 현실을 반영하여, 온라인 인격권 보호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적 함의가 크다. 현재는 디지털 공간에서 인격권 보호가 표현의 자유 보호보다 항상 후순위로 밀릴 수 없으며, 특히 성적 인격권 침해의 경우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향후 언론중재위원회가 포털·SNS·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성적 모욕, 사생활 침해 분쟁을 다룰 때 중요한 헌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반복적·조직적인 온라인 성희롱·성적 모욕 표현, 검색·추천 알고리즘이 특정인의 인격권 침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등에서, 플랫폼의 관리·통제 가능성과 책임 범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여지를 넓혀 주는 것이다.

나. 기술적 완결성과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

한편 현재의 합헌 결정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모든 위험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필터링 기술의 한계로 인해 정상적인 콘텐츠가 불법촬영물로 오인되어 차단되는 ‘과차단’ 문제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 위축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해시값 대조 방식은 동일 파일의 재리포는 막지만, 미세하게 변형된 파일에는 무력하다는 기술적 한계도 상존한다.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사업자들은 필터링 알고리즘의 정교화와 성능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오식별·오차단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EU DSA가 플랫폼 내부 이의신청 절차, 대체적 분쟁해결(ADR), 국가 감독기구와의 협력 등을 상세히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역시 언론중재위원회나 별도의 준사법적 기

구를 활용해 온라인 콘텐츠 분쟁을 신속·전문적으로 조정하는 모델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 표현의 자유 위축을 최소화하는 방향일 것이다.

8. 나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디지털 영토를 향해

현재의 이번 결정은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었을 때, 국가와 플랫폼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 결정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타인의 고통을 소비할 자유, 특히 피해자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까지 포괄하지 않는다는 점을 헌법적으로 분명히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 기술은 지금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진화하고, 법은 언제나 그 뒤를 쫓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플랫폼의 공익적 관리 책임’이라는 두 축은, 변동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헌법적 지침으로 기능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는 만큼, 그 기술이 만드는 어두운 그늘을 지우기 위한 법적·기술적·사회적 노력을 병행할 때 비로소 안전한 디지털 공동체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합헌 결정이 디지털 시대 인권 보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인간의 존엄성과 기술 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디지털 영토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이혼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비판적으로 살펴보기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가족의 변화와 리얼리티 쇼의 소재로서의 이혼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제작비는 적게 드는 반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시청률과 화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 방송국 입장에서는 유용한 콘텐츠 포맷이라고 할 수 있다. 출연료 부담이 큰 유명 연예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장소 섭외나 미술, 특수효과 등의 고비용 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역시 적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애 리얼리티를 비롯한 각종 리얼리티 쇼 장르는 글로벌 인기 장르가 되었으며,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넷플릭스가 한국 자체 제작 연애 리얼리티 쇼를 연이어 성공시키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 비연예인이 등장하고 가감 없이 사생활과 감정을 노출하면서 극적 구조를 만들어가는 리얼리티 쇼는 이제 우리 영상 문화의 핵심 장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리얼리티 쇼 장르에서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리얼’의 영역은 이혼, 그리고 이의 바탕이 되는 가족 내 불화 소재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와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 건수)은 2024년 기준으로 1.8건인데, 2003년 3.4건으로 최고치를 보였던 이후 2020년대 들어 2건 이내로 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¹⁾ 1970년대 0.4건 정도였던 조이혼율은 가파르게 증가해 왔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이혼에 대한 인식 역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행하는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2006년 조사에서는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19.5%였던 데 비해, 2024년에는 6.1%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대로 “이유가 있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라는 인식은 2006년 기준 6.8%에서 2024년 20.5%로 증가하였다.²⁾

하지만 사회 제도, 일상생활 및 동료와 시민 관계에서 이혼에 대한 차별은 잔존하고 있으며 이혼은 남 보기 부끄러운 것, 인생의 실패, 자녀에게 입히는 상처 등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김명찬, 2022). 가정의 ‘파탄’을 막는 것이 좋다는 인식은 제도 수준에서도 작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민법」 개정을 통해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 도입 당시 제시된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성급하고 경솔하게 이루어지는 이혼을 막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협의이혼제도 하에서 이혼 관련 상담을 맡는 상담위원들의 활동 동기를 조사한 결과, 가정의 회복과 건강 가정 수립에 일조하겠다는 것, 이혼을 숙고할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것이 상위에 등장하는 등(이상욱, 2019) 이혼을 ‘가능하면 막아야 한다’, 이혼 가정은 ‘건전한 가정’ 형태가 아니라는 대중적 인식은 상당히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방송 역시 ‘건전한 가정’을 중요한 이념적 가치로 삼아 왔다. 1970년대의 방송 심의 기준에는 ‘혼인제도와 가정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억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고, 박정희 정권 후반기에는 가정, 가족, 결혼제도의 질서 유지를 공익으로 설정하면서 방송을 규제한 바 있다(백미숙·강명규, 2007).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립 후 정비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도 “방송은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가족 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설정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족의 안정’이라는 가치는 한국 방송이 지켜야 하는 윤리성의 정서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한국 방송이 받았던 비판 중 하나는, 주부 대상 방송 등에서 진행되어 온 부부 상담 포맷이 가족의 회복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이었다. 결혼 생활의 문제와 고통에 대한 여성들의 토로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회적 정서 속에서 여성이 견뎌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방송에서 공적으로 이혼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은 정상 가족, 건전한 가족 등의 틀 안에서 언급하기 어려웠던 가족 내 폭력과 같은 여러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고, 가족 내의 갈등 발생 이유에 대한 탐색과 민주적 관계에 기반한 해

1) 조이혼율 관련 통계는 통계청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였다. 통계청, (2025. 3. 20), 2024년 혼인·이혼 통계,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79907>

2) 이혼에 대한 인식 지표는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지표누리 자료를 참고하였다. 지표누리, (2025. 11. 9), 이혼에 대한 인식,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10&idxCd=F0045>

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시청률 상승과 화제성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는 리얼리티 쇼에서 '관계에 기반한 민주적 해결 방안 모색'만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화제가 된 이혼 리얼리티 예능들이 변화한 사회상 및 평등한 가족의 개념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출연자의 권리보호 방안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혼 리얼리티 쇼와 가족에 대한 문제제기

불륜과 이혼이 방송극의 주요 소재였던 것은 오래된 일이다. 대표적으로 1999년부터 방영되어 오랜 기간 금요일 시청률 상위권을 차지했던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은 이혼 조정 법정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되었다. 실제 이혼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19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제작되면서 자극적 편집과 극적 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일종의 '막장 드라마'처럼 인식되곤 했다. 이처럼 극화 형식으로 제공되어 일정 정도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했던 드라마 형식의 이혼 소재 콘텐츠들은 2020년대 들어서 종편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리얼리티 쇼 영역으로 들어왔다. 2020년 TV조선이 <우리 이혼했어요>를 방송한 바 있고, 2024년 MBN은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을 제작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유명인이 출연한 경우이다. 비연예인이 출연하는 JTBC <이혼숙려캠프>가 시청률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면서 본격 이혼 리얼리티 예능의 성공시대를 알리게 되었다. 이들 이혼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은 부부간 갈등을 드러내면서 위자료 산정 혹은 패널 토크 등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는 포맷을 취한다. 예컨대 <이혼숙려캠프>는 현행 법제도에서 제공하는 이혼숙려기간 제도와 같이 가사조사관과 전문가들이 이혼을 실제 하게 되면 위자료를 어떻게 할 것이며 실제 가정생활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에 대한 조인과 상담을 제공하여 이혼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러한 이혼 리얼리티 쇼들은 가족 관계의 복잡성과 딜레마들을 노출하고, 출연자들이 자신이 가진 문제점과 관계적 역량 부족을 직면하게 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적 권력관계에 따른 불평등한 상호작용이나 가사 배분의 문제 등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조인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변화하는 젠더 관계와 가족의 의미 변화를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부부간 성관계에 대한 요구가 어떤 맥락에서 폭력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언어폭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점, 육아에 대한 책임의 설정 등 사회적 문제 설정 기능도 있다. 리얼리티 쇼로서의 이혼 예능 프로그램들은 스타 심리 상담가와 전문의를 탄생시켰는데, 이들의 조언을 자신의 가족 관계와 결혼 생활에 비추어 보고 변화를 꾀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시청자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가족의 파탄을 막는다’라는 정서가 연예인 패널들을 통해 표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 이혼했어요>의 경우 재결합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출연자가 심한 악성 댓글에 노출된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한부모 가족을 자연스러운 가족 형태의 일부로 보지 않는 시각이 은연중에 표출되고 ‘자녀를 위해서는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 이 경우, 이혼으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남성과 여성의 어려움은 서로 다르고 젠더화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효과를 낸다는 것을 짚어내지 못하기도 했다.

이혼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예능의 성격을 가지기 위해 자극적 편집과 갈등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삶의 일부를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생활의 내밀한 부분과 출연자들의 일상이 방송사에 의해 무책임하게 오락거리가 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성관계에 대한 언급은 물론, 자녀나 원가족의 이야기 역시 노출되고 있으며, 현장 영상이라는 맥락에서 부부간 일상 속의 대화와 다툼, 그리고 출연자들의 잘못이 집중적으로 부각된다. 사회 구조 속에서 젠



더 관계의 불평등이 가족 내 관계 역시 재구조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고찰이나,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 하에서 출연자 가족이 가진 취약적 조건, 삶의 맥락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개인의 책임과 심리 문제로 환원되어 진단되고 있다. <이혼숙려캠프>의 경우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를 도입하여 부부 상호 간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이 질문들이 종종 이혼에 도움이 되는 방향도, 재결합에 고려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자극적 질문들로 흐르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³⁾ 결과값이 판정 불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당 검사 자체가 정확도가 불충분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갈등을 부각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 구성된 질문들의 자극성이 높아 이에 대한 출연자의 대답이 진실 혹은 거짓일 경우 모두 비난의 대상으로 구성되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정과 조연을 위한 맥락이라고 해도, 이것이 '방송' 특히 디지털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개인의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행위와 심리 양상들이 세세하게 공개되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출연 부부마다 붙여진 별칭들은 관련

3) 예를 들어, 상대를 집에서 키우는 개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이제까지 부인해 온 불륜 의심 사건이 진실인지 아닌지 등을 묻는다.

연예 뉴스에 등장할 뿐 아니라 구글과 같은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로 남고 있다. 인간은 변화하는 존재이고 또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이들의 인생이 몇 시간의 방송 분량으로 축약되면서 비난 가능한 대상으로 영속성을 갖고 디지털 공간에 떠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리얼리티 쇼 출연자에 대한 보호: 규정과 윤리 기준 미비와 시청자의 책임

우선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이러한 리얼리티 쇼에 참여하는 비연예인 출연자들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에 대한 문제를 방송 제작사와 우리 사회가 건전한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일 것이다. 이혼 리얼리티 예능은 예컨대 연애 리얼리티 쇼와는 다른, 훨씬 더 극적인 갈등을 담을 수밖에 없는데, 이혼의 '귀책'을 다루는 과정에서 개인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불륜, 도박, 알콜 중독 등의 소재를 노출하거나 편집을 통해 더 극적으로 묘사한다. 이때 이러한 삶을 노출하게 되는 비연예인 출연자가 보호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연예인 출연자들은 대체로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이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고비용의 조치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게 있는가를 따지는 맥락이 부각되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시청자들이 스스로 이혼 법정의 판사 혹은 범위를 캐는 수사관이 되어 출연자를 판단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 역시 막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이혼 리얼리티 예능 중 일부 프로그램은 유튜브 댓글란을 막고 있다(예: <한 번쯤 이혼할 결심>, <이혼숙려캠프>). 하지만 초기 프로그램들, 예컨대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유튜브나 관련 뉴스의 댓글란을 막는 것은 출연자에게 가해지는 비난의 일부를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 출연자의 SNS를 찾아가 직접 모욕적인 글을 남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SNS, 커뮤니티, 블로그와 같은 형태의 재생산 게시물들은 조회수를 노리고 프로그램 직후 다수 생산·유통되기 때문에 출연자들이 받아야 하는 디지털 공간의 모욕을 제어하거나 줄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리얼리티 쇼의 문제 중 하나는 결국 시청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에 있다. 물론 모든 문제가 시청자에게 있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청자가 이 문제의 일부라는 점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시청자와 방송사 간 이해관계가 상호적으로 작동하면서 생산된다. 자극적 프로그램을 흥미로워하는 시청자의 욕구가 시청률과 화제성 지표로 드러나고 방송사들은 시청자들이 원한다면 더 욱 자극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리얼리티 쇼는 시청자들의 관음증적 욕망을 자극하고, 폭력적 상황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공격성을 소비하게 하는 장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Dixit, 2022).

영국의 오프콤(Ofcom)은 2020년 리얼리티 쇼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⁴⁾ 리얼리티 쇼 출연자들의 자살 사건이 이어지면서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의 폭력적 시선에 노출되도록 한 방송의 책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오프콤의 지침은 “프로그램이 언론이나 소셜 미디어의 높은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에 갈등이나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포함되는 경우, 또는 출연자가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내용이나 사적인 부분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작진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혼이라는 과정은 이 지침이 제시하는 바에 모두 해당하며, 무엇보다 이후 실제 출연자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 이혼을 리얼리티 쇼의 소재로 삼고자 한다면, 출연자 보호와 이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적절한 주위가 어떠한 범위까지이며, 실제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존재는 제작진이 어떤 것을 리얼리티 쇼의 소재로 삼아도 되는지, 그리고 사전에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고에 도움을 준다. 또한 출연하려는 사람 역시 이러한 숙고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향후 겪을 수 있는 위험과 어려움에 대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 여러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프로그램 출연을 후회하고 있고 <우리 이혼했어요>의 참여자 중에도 이러한 소회를 공격적으로 밝힌 바 있다는 점에서, 출연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현재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사전에 이해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방송의 맥락에서도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방송국 자체적인 윤리 기준을 확립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댓글 비허용과 같은, 시청자의 악의로부터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말미에 시청자들에게 무차별적인 모욕적 댓글이나 코멘트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성도 있다. 이때 모든 책임을 시청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리얼리티 쇼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편집 방식, 패널의 발언 등이 결국 출연자를 비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비하는 대중들이 도덕적 우월감을 갖게 만드는 방식으로 시청률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제작자가 제작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할 때 이혼 리얼리티 쇼를 소비하는 시청자의 행태 역시 바뀔 수 있다. 출연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족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혼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 🍵

4) 이하의 내용은 Ofcom의 지침을 정리한 것이다. Ofcom, (2020, 12, 8). Protecting participants in TV and radio programmes, <https://www.ofcom.org.uk/siteassets/resources/documents/consultations/category-2-6-weeks/158317-protecting-participants-in-tv-and-radio-programmes/associated-documents/statement-protecting-participants-in-programmes.pdf?v=325612>

참고 문헌

- 김명찬. (2022), 자녀가 있는 중년남성의 이혼 관념 재구성 경험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질적탐구, 8(4), 259-286.
- 백미숙·강명구. (2007), '순결한 가정'과 건전한 성윤리, 한국방송학보, 21(1), 138-181.
- 이상욱. (2019), 협의상 이혼 제도의 개선 방안, 영남법학, 48, 167-190.
- 통계청 보도자료. (2025, 3, 20), 2024년 혼인·이혼 통계,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79907>
- 지표누리. (2025, 11, 9), 이혼에 대한 인식,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10&idxCd=F0045>
- Dixit, M. (2022), An Exploratory Study of the Fluid Nature of Reality Shows: Assessing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Quarterly Review of Film and Video, 39(1), 190-211.
- Ofcom. (2020, 12, 8), Protecting participants in TV and radio programmes, <https://www.ofcom.org.uk/siteassets/resources/documents/consultations/category-2-6-weeks/158317-protecting-participants-in-tv-and-radio-programmes/associated-documents/statement-protecting-participants-in-programmes.pdf?v=325612>



언론중재위원회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12권 제1호 발간 예정



언론중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심도있는 학술적 논의를 위해 <미디어와 인격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인격권>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이며 연 3회 발간(4월, 8월, 12월)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획논문 주제

미디어 관련 법 개정 논의와 명예훼손 규율 체계의 재검토



연구논문 주제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언론법제 관련 판례평석 포함)



응모자격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2. 관련분야 전자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발간일

2026년 4월 15일 발간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시거나 연구센터(02-397-3042)로 문의바랍니다.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